국세청
www.nts.go.kr/kor

2014
Russia

러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NT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머리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이탈리아에 대한 세무안내서와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호주, 폴란드에 대한 세무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세무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서 진욱

✻ 해외(러시아) 세정 연구보고서 요약(要約)

Ⅰ. 국가 개요 ····· 1

1. 국가 개황 등 ····· 2
2. 한국 - 러시아 관계 ····· 3
3. 최근 이슈 ····· 4
4. 한국의 러시아 투자 추이 ····· 6

Ⅱ. 조세 제도 ····· 7

1. 러시아 세법 개요 및 조세체계 ····· 8
2. 법인 이윤세 ····· 9
3. 부가가치세 ····· 18
4. 러시아 이전가격 세제 ····· 25
5.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 38
6. 과소자본세제 ····· 49
7. 법인재산세(Tax on the Property of Organization) ····· 53
8. 사회보장세(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 55
9. 기타 주요 세제 ····· 59
10. 2014년 개정 세법 주요 사항 ····· 74
11. 러시아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기타 법령 정보 ····· 76

국세청
WWW.NTS.GO.KR

Ⅲ. 외국인 투자환경 ····· 85

1. 러시아 주요 산업 동향 ····· 86
2. 한-러 조세조약 ····· 100

Ⅳ. 부록 ····· 119

1. 러시아 관세 제도 ····· 120
2. 러시아 투자 관련법 ····· 128

❑ 참고문헌 ····· 141

국세청
www.nts.go.kr

해외(러시아) 세정 연구보고서 요약(要約)

❑ 연구배경(왜 러시아인가?)

○ 러시아는 '12년에 기존에 2개 조항에 불과하던 이전가격 세제를 **별개 Chapter로 분리하여 세분화**시키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옴

○ '13.3월 **TP Notification** 제출·요구기간을 연기하고 TP 세무조사 전담반을 **준비**하는 등 **공격적인 세정 전개 가능성 큼**

○ 따라서, 러시아 이전가격에 대한 세법규정과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기업활동 지원 필요가능성 증대**

❑ 연구내용

제 목	내 용	포 커 스
국가개황	▪ 국가개황, 한-러 관계 최근 이슈 ▪ 한국의 러시아 투자추이	▪ 기존 내용 업데이트 ▪ 중요 내용 추가
이전가격 세제특징	▪ 이전가격의 개념 ▪ 한국의 세제내용과의 차이점	▪ 국내거래에도 이전가격 개념 적용
이전가격 세제법령	▪ 특수관계자, 지배거래, 정상가격 산출 ▪ 이전가격 문서화 및 이전가격 조정	기존의 법령 번역 수준 탈피 → 실무중심으로 기술하려고 노력
APA	▪ APA 진행과정 요약 및 과정별 내용 ▪ 세무조사와 APA 관계 및 MAP 동향	
안내책자 추가내용	▪ 가산세 규정, 지점설립 법령	12년 발간 책자 검토 후 추가·수정 등 변경이 필요한 중요 내용 중심
개정세법	▪ 12년 ~ 14년 세법개정 내용	
현지기업 유의사항	▪ 세법 중 현지기업이 유의할 내용	

❑ 결 론

러시아 특유의 패쇄성과 언어 등으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러시아 현지 회계법인, 네델란트 회계법인, 현지기업 등으로부터 실무중심자료를 수집·연구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

국세청
www.nts.go.kr/kor

I

국가 개요

1. 국가 개황 등
2. 한국 - 러시아 관계
3. 최근 이슈
4. 한국의 러시아 투자 추이

1 국가 개황 등[1)]

❑ 일반현황

위 치	유라시아 대륙
면 적	17,075,200㎢[세계 1위](한반도의 77.1배, 미국의 1.8배)
시 차	서울과의 시차 -5시간 / 총 러시아내 9개 시간대
수 도	모스크바(11,503,501명, 2012.7.1.)
인 구	1억 4,314만명(2012.7.1.)
민 족	러시아인(80.9%), 타타르인(3.8%), 우크라이나인(1.45%), 기타 150여 소수민족(고려인은 약 100만명으로 추산
종 교	러시아 정교(이외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등)
정부형태	연방제, 대통령제(6년 중임제), 의회민주제
국가원수	대통령(블라드미르 푸틴), 총리(드미트리 메드베데프)

❑ 경제지표

G D P	(13년) 66,689십억 RUB, (12년) 62,357십억 RUB
실질 경제성장률	(14년 전망)1.5～1.8%, (13년)1.3%
1인당 GDP	(13년) US$ 14,580, (12년)14,068
실 업 률	(13년) 5.6%, (12년) 5.7%, (11년) 6.6%
물가상승률	(13년) 6.5%, (12년) 6.6%, (11년) 6.1%
화폐단위	RUB (루블)
환 율	(13년 평균)1US$=31.8 RUB, (12년)31.09 RUB
외 채	(13년)US$ 7,320억('13), (12년) 6,378억
주력산업	가스, 석유, 화학, 금속, 석탄, 방산, 항공우주 등

1) 출처 : KOTRA 국가정보 자료

2 한국 - 러시아 관계[2)]

❑ 체결협정

○ (1990.9월) 한-소 국교 수립(북한과는 1948.11.11. 수교)
○ (1991년 ~ 2011년) 생략
○ (2012.9월) 이명박 대통령 방러,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참가
○ (2013.9월) 박근혜 대통령 방러,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가
○ (2013.11월) 푸틴 대통령 방한, 비자면제협정 체결 등 35개항 공동성명 발표

❑ 교역규모

○ (13년)US$ 229.3억 - 수출 US$ 114.4억, 수입 US$ 114.9억
○ (12년)US$ 224.5억 - 수출 US$ 110.9억, 수입 US$ 113.5억
○ (11년)US$ 211.5억 - 수출 US$ 103.0억, 수입 US$ 108.5억

❑ 교역품목

○ (수출)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IT제품, 가전, 건설중장비, 선박 등
○ (수입) 원유, 나프타, 유연탄, 천연가스, 알루미늄, 강반제품, 해양 구조물 등

❑ 투자교류

○ (한국의 對 러 투자) US$ 20.7억('13누적 기준)
  - 102백만불('12), 97백만불('11), 334백만불('10)

○ (러시아의 對 한 투자) US$ 1.5억('13누적 기준)
  - 648만불('12), 659만불('11), 432만불('10)

2) 출처 : KOTRA 국가정보 자료

3 최근 이슈[3)]

❑ (러시아) 크림반도 귀속

○ 2014. 3. 17. 크림자치공화국 독립 및 러시아 귀속 찬반투표에서 99.77% 찬성으로 가결, 2014. 3. 18. **크림공화국 합병**

- 크림반도 귀속은 러시아에게 ①옛 소련 영토회복, ②부동항 확보, ③러시아계 주민보호를 통한 여론 및 지지율 유지, ④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과시라는 의미가 큼

○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를 귀속시킴으로써 **푸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 상황**

❑ (한-러) 철도협력

○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북한 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은 동북아 물류 허브 건설과 함께 해상운송에만 의존했던 물류 시스템의 효율적인 재편 가능

-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유라시아 교통기반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 TKR-TSR 연결사업은 2001년 한·북·러 양자간 정상회담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다가 2008년 하반기 북한의 대외 강경 정책 노선 회귀

3) 출처 : KOTRA 국가정보 자료

- 2012년 로켓 발사 실험, 2013년 핵실험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2013년 11월 한-러 정상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 MOU 체결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 (한-러) 에너지 산업 분야

○ 한국, 중국, 일본의 중동지역 석유 의존도가 75% 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러시아산 에너지 확보와 공급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석유개발, 천연가스, 가스관 연결 사업 등 추진을 위해 러사아와의 협력을 추진 중

❑ (한-러) 경협차관 상환협상 타결

○ 지난 1991년 한-소 수교 등으로 우리정부는 러시아에 총 14억 7,000만 달러(현금 10억달러, 소비재 4억 7,000천만 달러)의 경제협력 차관 제공

○ 당초 1999년까지 상환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러시아 자국사정으로 2003년 5월 기준 미상환금은 총 22억 4천만 달러에 달함

○ 2003. 6. 20. 상환협상에서 원리금 중 6억 6천만 달러는 탕감하고 나머지는 2025년까지 23년간 분할 상환받기로 하였으나, 2004년 9월 한-러 정상회담 때 군사기술로 대신 상환받기로 합의

❑ (한-러) 과학기술 협력

○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 확보와 자력 발사 능력 개발을 위한 발사체 개발을 위해 2001년부터 러시아정부(러시아항공우주청)와 우주기술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는 2009년 8월, 2010년 6월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3. 1. 30. 3차 발사에 성공함

○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에도 꾸준한 우주분야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3. 11. 13. 우리나라 과학기술위성 3호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함

4 한국의 러시아 투자 추이[4)]

❑ 2013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對 러시아 투자 누적액은 20억 5만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음

○ 1989년 48만달러를 시작으로 2006~2010년 전체 러시아 총 투자액의 72%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14.7억)를 단행하였으나, 2011년(0.9억), 2012년(1억), 2013년 3분기까지 0.6억달러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

○ 투자분야는 2013년 기준 제조업이 11.8억달러(148건)로 전체 對 러 투자의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도소매(2.8억달러, 14.0%), 광업(1.5억 달러, 7.6%) 등이 차지하고 있음

4) 출처 : KOTRA 국가정보 자료

국세청
www.nts.go.kr/kor

Ⅱ

조세 제도

1. 러시아 세법 개요 및 조세체계
2. 법인 이윤세
3. 부가가치세
4. 러시아 이전가격 세제
5.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6. 과소자본세제
7. 법인재산세(Tax on the Property of Organization)
8. 사회보장세(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9. 기타 주요 세제
10. 2014년 개정 세법 주요 사항
11. 러시아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기타 법령 정보

1 러시아 세법 개요 및 조세체계

❑ 러시아연방 세법(Tax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개요

○ 러시아연방 세법 1부(제1조~142조)는 과세원칙과 정의, 행정 및 일반적 과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총괄부문으로 1998년에 개편되어 1999.1.1. 부터 발효됨

○ 러시아연방 세법 2부(제143조~398조)는 개별 세금의 산정 및 납세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통합사회세, 법인이윤세 등의 조항이 2000년에 개편되어 2001년부터 발효됨

❑ 러시아 조세체계

○ 러시아의 조세체계는 세율을 규정하는 정부 주체에 따라 연방세 및 연방공과금, 광역단체 지방세(Regional Tax), 기초단체 지방세(Land Tax)로 나뉘어짐

- 연방세율은 러시아연방 세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지역세율의 경우 연방세법에 의하여 제한되나 광역자치단체법(regional law)에 의하여 규정됨

<러시아 조세 및 공과금 시스템>

구 분	주요 조세 및 공과금
연방세 및 연방공과금 (제13조)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법인이윤세, 광물세, 수자원세, 야생동물 및 어업자원이용공과금, 국가수입수수료(8개) ※ 기존 통합사회보장세는 2010년부터 보험부담(Insurance Contribution)으로 대체됨
광역단체 지방세 (제14조)	교통세, 도박세, 법인재산세 (3개)
기초단체 지방세 (제15조)	토지세, 개인재산세 (2개)

2 법인 이윤세

❑ 납세의무자

○ 러시아 기관, 러시아내 상설 외국기관(permanent establishment), 상설외국기관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외국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를 진다.

○ 상설 외국기관(permanent establish ment)의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 + 자본 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에 따른 이익(손실) + 비 영업수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산정

○ 과세 대상 소득은 직전 4분기의 분기별 평균소득이 백만 루블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음

❑ 소득 분류

○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
- 제조 및 매입한 상품의 판매, 용역제공, 재산상의 권리(주식,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

○ 판매 외 소득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로부터 얻는 이익, 환율평가차이로 인한 손익, 법원의 결정에 따른 과태료, 연체료, 실·손해배상금 수입, 자산임대소득,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소득, 금전대차에 따른 수입이자, 적립금의 환입,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등 제249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소득

❑ 비용

○ 비용(Outlay)의 의의

- 소득 창출 목적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된 모든 비용으로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에서 감하는 비용 (우리나라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
- 근거가 충분하고 서류상 확인이 되는 비용

○ 비용의 분류

- 생산 및 판매에 속하는(involved in production and sale) 비용
  상품의 제작·보관·배송, 노동·서비스 제공, 상품(노동, 서비스, 재산권) 구매 또는 판매와 관련있는 비용, 고정 자산 및 그 밖의 자산의 유지·가동·수리·기술적 제공과 이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천연자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의무보험 및 임의 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있는 비용
- (생산 및 판매와 관련있는 비용) 물질적 비용, 임금 비용, 감가상각비, 그 밖의 비용
- (판매 외(Extra-sale) 비용) 생산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활동에 대해 근거가 있는 비용

○ 비용의 공제

- 비용 공제 대상 및 한도

- 광고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옥외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여타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 인정
-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비용 등은 납세자의 총 임금 지급액의 4% 까지 공제 인정
- 이자공제의 일반원칙은 동종대출의 20%를 상회하는 이자는 공제되지 않음
- 납세자는 고정자산 유지보수, 하자이행, 회수가 의심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적립금(reserve)을 유보 가능

- 감가상각액수는 납세자가 매달 산출하고, 감가상각 자산의 각각에 대하여 따로 가산됨
  - 감가상각 가산은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가산
  - 감가상각 해당 자산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하거나 임의의 이유로 납세자의 감가상각자산 항목에서 해당 자산이 제외된 경우, 그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산이 중단됨

○ 연구개발비(R&D)로 손금(損金, 세무상 비용) 인정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확정 공표하였으며 아래의 4가지 항목임

① 연구개발에 사용된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연구개발 인력에 지급된 급여 (Salary)
③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된 원재료 비용 (Material)
④ 러시아 기술 개발 발전 기금 납입금

○ 연구개발비용의 **1.5배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 신설**

- 연구개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개시한 익월 초부터 발생한 모든 비용의 1.5배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즉, 매년 세무신고시 세무신고서 양식 (Tax return)과 함께 별도의 Special Report(연구개발업무 입증 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 Special Report는 개별 연구 과제 및 개발 프로젝트 단위별로 서류 제출해야 하고 제출서류는 세무서 내의 기술 전문가 심사를 거침
- 제출된 서류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자격 미달, 내용 불충분 등의 사유가 적발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 비용의 1.5배까지 납세자의 익년 세무신고시 “영업외 이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 가능

○ **미래 연구개발을 위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 권한 부여

- 미래 연구개발을 위한 충당금을 최대 2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금액은 연구개발 과제의 추정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실제 발생 비용은 충당금 설정액에서 상쇄 가능하며 연구개발 비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손금산입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세율

○ 단일세율인 20%를 기본세율로 하며, 그 중 2%는 연방재정에 귀속되고, 18%는 지방재정으로 귀속(지방정부는 13.5%를 한도로 세율을 낮출 수 있음)

○ 러시아 국내에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 아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20%
- 선박, 항공기 기타 운송장비나 컨테이너 사용, 유지, 임대 관련 소득에 대하여 10%

○ 교육 또는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정해진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윤세에 대하여 0%가 적용됨

❑ 세금납부 절차

○ 과세기간(Tax period) 및 신고기간(Reporting Period)

- 과세기간은 1역년으로 하고, 1역년 중 3개월(first quarter), 6개월(half-year), 9개월(nine months)을 신고기간으로 함

○ 법인세 선불 납부 계산 절차 및 기한

- 과세기간 초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소득을 누적금액으로 산출하여 선납세액을 계산하며, 신고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월선납세액을 계산 가능
  - 1분기 월선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최종 분기의 월선납세액
  - 2분기 월선납세액 = 3개월 선납세액 × 1/3
  - 3분기 월선납세액 = (6개월 선납세액 - 3개월 선납세액) × 1/3
  - 4분기 월선납세액 = (9개월 선납세액 - 6개월 선납세액) × 1/3
- 월선납세액이 음이거나 0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음
- 직전 4분기동안 매분기마다 영업소득이 10,000,0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 금융기관, 러시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비영리단체, 파트너십, 생산분배협정 투자자등은 신고기간에 따른 분기선납세액을 계산
- 당해 신고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선납세액은 당해 신고기간의 매월 28일에 납부하고 당해 신고기간의 결산을 바탕으로 선납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고, 신고기간동안의 선납세액은 과세기간의 결산을 바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
- 1과세기간 동안의 확정 신고는 익년 3월 28일까지 하여야함

❑ 감가상각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2010년 제256조 및 제257조 개정(Federal Law No.29-FZ of 27 July 2010)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은 내용연수가 12개월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40,000루블 이상인 자산 (이전의 20,000루블 한도액을 대체)
- 자산 유형과 내용연수에 따라 10개의 그룹으로 분류 (제258조)하여 감가상각법 적용

○ 감가상각액 산출 방식 및 절차

- 납세자는 건물, 구축물, 운송장비 등 제 8,9,10 그룹에 해당하는 자산은 정액법을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정률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나 한 번 선택한 방법은 임의로 변경 불가능
  - 정액법은 감가상각자산의 최초 장부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상각 (감가상각률 K=[1/n]x 100%)
  - 정률법은 잔존장부가액에 「2/잔존내용연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상각 (감가상각률 K=[2/n]x100%)

○ **유형자산 감가상각 시작 시점**

(관련법규 : Federal Law No.206-FZ of 29.11.2012)

- 러시아 법인세법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시작 시점은 과거에 유형자산의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
- 하지만, 2012년 법개정으로 인해 유형자산 관리 대장에 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운영하는 월의 익월부터 유형자산 감가상각 가능

○ **부실채권 상각**(관련법규 : Federal Law No.206-FZ of 29.11.2012)

- **(기준 확장)**부실채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세법으로 정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산입의 요건이 완화되므로 실생활의 부실채권 용어와 세법상 차이 존재
- 2012년 법개정에서는 부실채권에 대한 정의를 완화하여, 추가적인 손금산입이 가능
- 향후에는 집행관에 의해 부실채권 회수 절차가 종료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됨

○ **유형자산 자본화 관련 비용**

(관련법규 : Federal Law No.206-FZ of 29.11.2012)

-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되는 취득・생산・현대화 관련 비용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가능하며, 이후에는 감가상각 가능하도록 개정

- 즉, 자본화 관련 비용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원가로 이연(인식)하여 감가상각으로 가능하게 변경

❑ 외국기업의 러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책임자 및 납부기한

- 원천징수 책임은 러시아 내 비상설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러시아 기업 또는 세무당국에 등록된 러시아 내 상설 외국법인이 지게됨
- 소득지급 후 다음 날까지 원천징수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벌금은 최고 관련금액의 20%에 달함

○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율

구 분	세 율
배당세 (Dividends)	0/9/15% (ㄱ)
국공채 및 지방채 이자소득, 모기지 담보부 채권 (Mortgage Backed Bond)이자소득, 모기지 담보참가 증서와 관련된 소득 (certain income from certificates of participation in a mortgage pool)	0/9/15% (ㄴ)
외국 회사에 지불하는 기타 이자 소득	20%
해외 운송 소득	10%
러시아에서 운용되는 부동산 임대소득	20%
로얄티	20%
벌금 및 수수료	20%
기타 다른 소득에 대해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소득	20%

(ㄱ) ①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러시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9%

② 외국법인이 러시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거나 러시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15% (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 가능한 경우 더 낮은 세율 적용 가능)

③ 러시아 기업이 배당 시,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을 구성하고, 지속적 보유 기간이 365일 이상일 경우, 제284조에 규정된 배당금 수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건이 충족하면 그러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0% 적용

(ㄴ) 제284조제4항에 규정된 채권 발행일 및 채권 종류에 따라 세율 달라짐

- 비상설 외국법인이 소득 수취 이전에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tax residence)임을 통보할 경우 해당조약에 근거한 세율로 원천징수 가능
-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10%,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 로열티는 5% 원천징수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음
- 조세 조약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 원인이 되는 지급(거래)발생 이전에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국가의 과세목적상 등록법인(tax resident)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실제로는 러시아 과세당국이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도 조약에 따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
- 조약에 따른 낮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조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등 환급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조속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 **세법상 외국인에 대한 채권이자수익의 원천징수면제**

- 세법상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수익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 주는 세법개정안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하여 2012년 6월 29일에 승인되었고, 2012년 7월 1일에 공포됨
- 2012년 6월 29일에 승인된 세법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전까지 발행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권에 대하여만 효력 발생

- 현재 러시아 세법에서는 국외로 이자수익 지급 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법상 방법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면제는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같은 효과임

-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은 러시아기관 또는 러시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관이 외국의 기관들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하에서 면제되는 것임

-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면제는 러시아 국내로부터 외국으로 이자가 지급될 때만 적용됨

- 이자수익 원천징수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기관이 러시아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증명이 가능해야 함

- 러시아 국내로부터 국외로 지급되는 이자수익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지급사실을 보증 받은 지급이어야 함

- 이자수익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채권은 러시아 당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채권이어야 하며 해당 채권들에는 러시아 주정부나 지방정부채권 또는 외국법에 의하여 발행된 아래 채권 등 해당

① 러시아 주정부채권 또는 지방정부채권

② 외국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들 중 다음 요건들 중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채권들
-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 러시아 증권당국에서 승인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의 채권 예탁과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채권

3 부가가치세

❑ 납세의무자(taxpayer)

○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법인 등 단체(organization), 외국 회사의 대표 사무소나 지점을 포함
- 개인사업자(individual entrepreneurs)
- 러시아연방 관세법에 의하여 정하는 러시아연방 관세선을 통과하는 재화의 이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인정된 자

※ (납부의무의 면제) 직전 연속 3개월 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VAT 제외) 의 총합이 2백만 RUB 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단, 직전 3개월 동안 소비세 과세대상 재화(excisable goods)를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음

❑ 부가세 등록(VAT registration)

○ 러시아 법은 별도의 부가세 등록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러시아 과세당국에 등록 시, VAT 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등록해야 함.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의 재화의 판매, 용역 및 서비스의 제공 (무상으로 이전된 것 포함됨)
- 러시아 연방 영토로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수입
- 재산권의 이전
-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조직체의 이윤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자체적 필요에 따른 상품, 용역 및 서비스의 이전
- 자체적 소비를 위한 건설·조립 작업

❑ 공급 장소

○ 상품, 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 장소가 러시아 연방 영토가 아니면 러시아 부가세의 범위를 벗어남.

○ 러시아연방 영토'는 러시아 대륙붕의 해양 구조물 및 기타 설치물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함

① 상품의 공급 장소

○ 다음 중 1개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영토를 상품의 공급장소로 인정함

- 상품이 러시아연방 영토에 위치하고, 하역되거나 운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품이 하역 또는 운반이 시작되는 때에 러시아연방 영토에 위치한 경우

② 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 장소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용역 및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사업 장소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됨.

○ 사업 장소란 회사가 등록된 장소를 의미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및 실행 주체가 위치한 곳, 회사의 법인 문서에 사업 장소라고 명시한 장소 또는 회사의 영구적인 시설이 위치한 곳을 의미함

- 부동산 및 동산과 관계된 서비스는 그 재산이 위치한 곳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함
-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관광, 휴양 및 스포츠 분야의 서비스는 그 서비스가 행하여진 곳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함
- 운송, 화물 및 관련 서비스의 목적지나 출발지가 러시아 연방 영토이고, 공급자가 러시아 단체 및 사업자인 경우이면 당해 서비스가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의 서비스들은 구매자의 사업 장소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함 : 자동차를 제외한 동산의 임대, 컨설팅,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광고서비스, 정보처리 서비스, 연구개발 업무의 수행, 소프트웨어 개발, 지적재산권의 이전
- 러시아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의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및 지질학적 조사와 관련된 특정 용역 및 서비스는 러시아 연방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됨

❑ 부가가치세율

○ 공급 특성에 따라 3가지의 VAT 세율이 존재함

① 영세율

- 영세율 적용 대상
  - 러시아연방 외로 수출되는 재화
  - 도착지나 출발지가 러시아 연방 외인 승객이나 수하물의 수송
  - 도착지나 출발지가 러시아 연방 외인 재화의 수송
  - 수출 및 수입하는 재화와 관련된 특정 파이프라인 수송 서비스, 파이프라인 라인 수송의 배치에 관련된 특정 서비스
  - 특정 국제 철도 수송 서비스 및 철도 차량, 컨테이너 제공 등 수송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 러시아 국경을 넘어 이동되는 재화의 저장이나 적환에 관계되어 항구에서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 수출품과 관련하여 내륙의 수로 수송회사로부터 제공된 특정 서비스
  - 통관 프로세스 서비스 (통관 프로세스 정리 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됨)
  - 해양선박 또는 정기 용선 계약에 근거해 운항되는 해양 하천 혼용 선박에 의한 수출입 재화의 운송

- 영세율의 적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각 타입에 맞는 일련의 문서를 작성해야 함
- 은행증명서는 요구되지 않음(후술하는 내용과 동일)

② 10%세율

- 특정 음식, 아동용품, 의료 제품, 서적, 정기간행물에 적용됨

③ 18%세율

- 영세율과 10%세율이 적용되는 것 외에는 18%의 VAT 세율이 적용됨

❑ 부가세 면제 대상

○ 주요 부가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연방에 등록된 외국시민 또는 외국 대표 사무소에게 러시아연방 영토의 시설을 임대하는 행위
- 의료 서비스 및 특정 의료 기기의 판매
- 은행 및 보험 서비스, 금융 파생재화의 판매, 주식 대여 및 'epo' 거래
- 통화 대부 이자, 보증 서비스
- 도박
- 특정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싱
- 토지와 주거용 건물의 판매 및 그러한 재산의 이자
- 특정 연구 개발 활동
- 생산비용이 단위당 100 RUB 이하인 재화의 광고에 사용된 재화의 무상제공
- 러시아에서 동일하게 생산되지 않는 기술 장비, 특정 의료 기기의 수입
- Skolkovo Innovation Centre 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 프로젝트의 참가자
- 외국 소비자에게 제공된 국제 통신 서비스의 제공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의 예

- 제조 및 상업 회사는 소비세를 포함한 재화 판매 가격
- 커미션 기준으로 활동하는 중개인 등은 커미션
- 수입재화의 경우, 관세 과세가액, 수입세, 소비세를 더한 값

○ 과세표준 확정 시기

- 과세 표준은 다음 중 빠른 날에 확정됨

  * 재화, 용역, 서비스, 재산권이 이전된 날
  * 미래의 재화, 용역, 서비스, 재산권의 이전에 대한 대금 지급 혹은 대금 일부의 분할지급이 이루어진 날

- 단, 다음에 해당하는 미래의 재화, 용역, 서비스에 대한 선수금 혹은 분할지급에는 부가가치세 적용되지 않음

  * 대부분의 영세율 적용 재화, 용역 및 서비스
  * 6개월 이상의 생산 주기를 가진 재화, 용역 및 서비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세액 공제

① 세액 공제 일반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총 세액을 재화, 용역, 서비스의 구입에 의해 기 지불된 VAT 만큼 세액공제를 통해 차감할 수 있음

○ 계약업체가 기간공사를 실시하고 고정자산을 구축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제시한 VAT은 당해 공사가 기장된 때에 세액공제 가능함

○ 고정자산 구입 시 지불한 VAT는 당해 고정 자산이 기장된 때에 세액공제 가능함

○ 비생산 지출에서 기 지불된 VAT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불가능함

○ 수입품, 출장비, 접대비 등의 경우에는 당해 VAT 가 실제로 지불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출장비, 접대비에 지출된 VAT 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음

② 매입 세액 안분

○ 재화, 용역, 서비스 구입 시 지출된 VAT 가 VAT 과세 대상 활동과 VAT 비과세 대상 활동에 동시에 관계된 경우에는 이를 안분하여 VAT 과세 대상이 되는 활동 관련하여 지출된 VAT 만 세액 공제함

○ 납세자는 VAT 과세 와 VAT 비과세 활동을 구분하여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함. 단, VAT 비과세되는 활동을 위한 지출이 전체 지출의 5%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구분 회계 기록 유지 의무가 없으며, 전체 지불 VAT가 세액 공제 됨(5% rule)

③ 조세기관 미등록 납세자 관련

○ 러시아연방 조세기관에 미등록된 외국 납세자는 러시아연방 조세기관에 등록할 경우에만 공급자에게 지불한 VAT 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이 경우에 조세기관 등록으로 인해 이윤세 등 추가적인 기타 세금 부담이 발생함

○ 러시아연방 조세기관에 미등록된 외국 회사가 러시아 연방에서 재화, 용역, 서비스를 러시아연방 조세기관에 등록된 구매자에게 공급할 때, 당해 공급에 대한 VAT 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러시아 과세당국에 직접 납부하며, 구매자는 그러한 VAT 만큼 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함

○ 러시아연방 조세기관에 등록된 중개인이 러시아연방 조세기관에 미등록된 외국 회사를 대신하여 재화, 용역, 서비스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순 가치에 대한 VAT 는 중개인이 공급자에게 지금하지 않고, 러시아 과세당국에 직접 납부함. 이 경우, 중개인이 그러한 VAT 만큼 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님

❑ 세금계산서(VAT invoice)

○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구매자 세액공제의 기본이 되는 문서로, 러시아어로 발행되어야 하고, 대표이사와 회계부장의 원본 서명을 포함해야 함

○ 원칙상 전자 인보이스도 가능하나,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형식이 없어 실제로 불가능함

○ 수량 및 가격의 변화로 구매자에게 제공된 재화, 용역, 서비스, 재산권의 가치가 변동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장부, 매출장 및 매입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함

❑ 납부 절차

○ 과세기간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고하고, 그 뒤 연속 3개월에 걸쳐 매월 20일까지에 동일 금액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 연합(Customs Union)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특별 조항

○ 관세 연합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말함

○ 관세 연합 내 하나의 국가에서 관세 연합 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 수출국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에는 수입국의 국내 VAT 세율을 부과함

❑ 최근 주요 세법 개정사항

○ **영세율 (0% 부가세) 적용 업무에 대한 매입부가세 환급 가능**

- 영세율 적용 업무와 관련된 비용 (구매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함.

○ **영세율 적용 신청시 은행 확인서(bank statement) 불필요**

- 부가가치세 변경법안 전, 납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류 중 “은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해당 은행확인서는 더 이상 불필요하는 등 영세율 적용과정 단순화

○ VAT활동과 Non-VAT 활동간의 매입부가세 배분과 관련된 5% Rule **규정 적용 관련 명확한 해석 추가**

- 개정전 법안에 의하면 납세자는 Non-VAT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이 전체 제조비용(Production cost)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매입부가세(Non-VAT 활동 관계없이)를 전액 환급 가능하도록 인정해 주는 규정(5% Rule이라고 함)이 있었음.
- 해당 규정의 경우, 제조비용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제조업체가 아닌 기타 법인, 즉 판매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불필요한 논쟁 발생
- 이에,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 “제조비용”이 아닌 “재화 및 용역의 판매/생산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포괄 명시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5% Rule 규정과 관련된 세무서와 논쟁 및 소송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

4 러시아 이전가격 세제

가. 이전가격 세제 연혁

○ **(2009년 4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및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이전가격 및 연결납세제도의 기본틀에 대한 합의

○ **(2009년 10월)** 재정부 및 경제개발부의 이전가격 신규 법규 개정안 합의

○ **(2009년 12월)** 신규 법규 개정안 국가 두마에 제출

○ **(2010년 2월)** 국가 두마에서 1차 심의 통과

○ **(2011년 7월)** 이전가격 법규 개정(2012. 1. 1.부터 시행)

< 신규 이전가격 법안 주요 내용 >

- 러시아 세무당국이 과세목적에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거래 유형의 종류가 상당히 감소
- 특수관계자 대상 확대
- 지배거래의 가격과 정상가격 차이에 대한 러시아 세무당국의 입증책임
- 이전가격세제의 기본전제로 “정상가격 범위(Arm's length principle)” 개념 도입
- 기존 Safe harbor 조항(정상가격과 20%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 삭제
- 정상가격 결정을 위한 활용가능 정보원천(Source)에 대한 목록 확대
- 정식으로 비교분석을 위해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 개념 도입
- 정상가격 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 도입 / 기존 방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
- 대응조정 개념 도입
- 신고 및 이전가격 문서준비에 대해 요구조건 안내
- 이전가격 관련 특별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소개
- 이전가격 신고 누락 및 문서 미비 등에 대한 벌금 도입

○ **(2013년 3월)** 이전가격 관련 신고 일정 등 일부 개정

나. 이전가격 세제의 특이성

○ 국제이전가격 개념뿐만 아니라 국내이전가격의 개념까지 함께 도입

- 즉, 외국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외국 자회사가 2개 이상 존재 시, 해당 자회사간 거래에 대해서도 이전가격 법률 대상이 됨

○ 이전가격의 참고자료는 국제자료가 아닌 러시아 국내자료의 비교시가를 우선으로 취급함

○ 특수관계자간의 보증 또는 신용공여를 통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이전가격 대상에서는 제외됨

- 향후 이전가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높으며, 향후 해당 보증료에 대한 적적성에 대한 러시아 세무당국의 주요 타켓이 될 수 있음

다.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

❑ 특수관계자 범위

-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
- 동일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이 소유된 두 법인
- 법인들의 대표가 동일인일 때 당해 법인들
- 동일인이 두 법인의 각각 이사회 구성원의 50% 이상이나 대표를 임명할 때 당해 두 법인
- 두 법인의 50%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이 동일인 또는 그들의 친족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을 때 당해 두 법인
- 한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
- 여러 법인들이 50% 이상의 지분 소유로 연결되어 있을 때 말단 피소유 법인과 상위 소유 법인이나 개인
- 고용주와 고용인·출자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개인

○ 대표적으로 지분율 25% 초과 보유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러시아 법원은 특정 거래가 위 열거된 범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특수관계자 사례

○ **(사례 1)** 직·간접 소유 지분율에 의한 특수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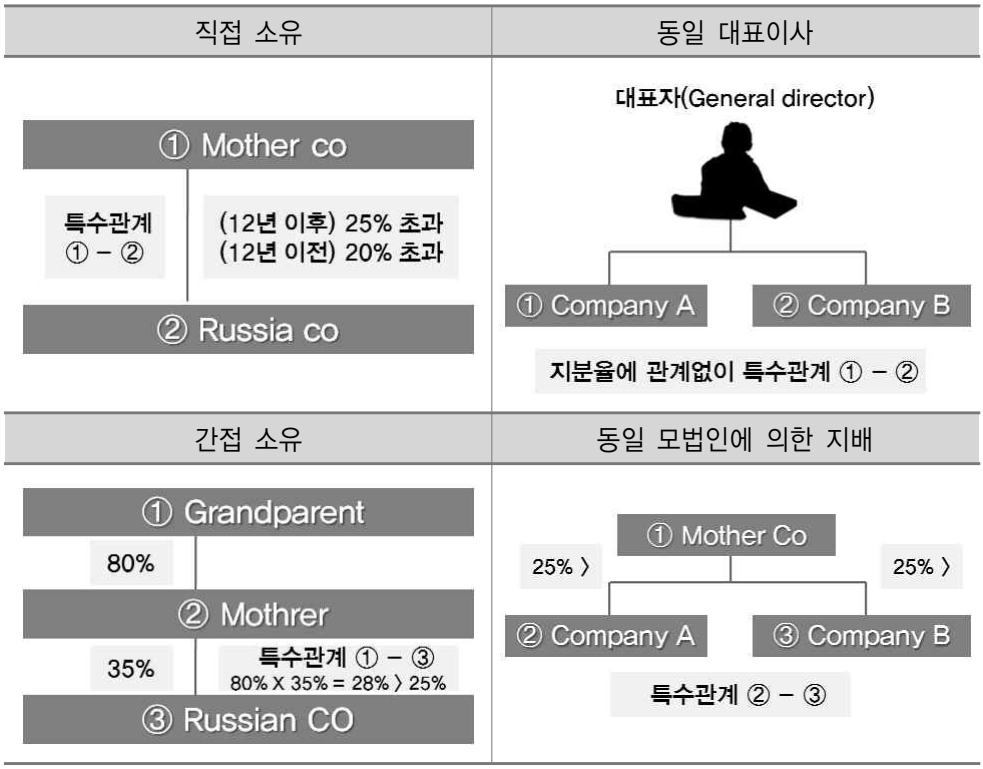

○ **(사례 2)** 다계층 지배구조에서의 특수관계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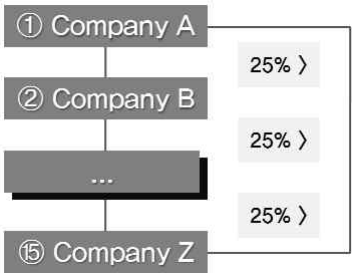

특수관계자 : ① - ⑮

간접소유지분이 2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과반수를 초과하는 지분을 연속으로 소유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

라. 지배거래 (Controlled Transactions)

❑ 거래지역 · 유형별 지배거래 적용 기준 요약

구 분	법인관계	지배거래 해당 기준
국내거래	특수관계	거래연도별로 **일정 소득금액 초과 등**
국외거래	특수관계	별도 기준없이 **모든 거래 해당**
	관계없음	▪ 일정금액 초과시 지배거래 해당 ▪ 상품시장 거래품목 거래시 ▪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과 거래시

❑ (국내거래) 특수관계자간 국내거래로부터 창출된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며, 거래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

일반유형	특수관계법인 A ⇔ 특수관계법인 B
소득금액 적용기준	▪ 2012년 : 30억 RUB 초과 ▪ 2013년 : 20억 RUB 초과 ▪ 2014년 이후 : 10억 RUB 초과
예외기준	▪ 다른 관할 구역이나 해외에 지사가 없는 동일 관할 구역 기업 간 거래 ▪ 동일한 연결납세 그룹에 속한 법인들 간의 거래

특정유형 1	특수관계법인 A ⇔ 특수관계법인 B
적용기준	▪ 거래로부터 창출된 연간소득금액 60천 RUB ▪ 거래법인 중 1개 법인이 광물추출세 납세자, 소득세 면제 납세자, 0%세율 적용 납세자, 특별경제구역 거주자(2014년부터)인 경우

특정유형 2	특수관계법인 A ⇔ 특수관계법인 B
적용기준	▪ 거래로부터 창출된 연간 거래금액 1억 RUB ▪ 거래법인 중 1개 법인이 농업통합세 납부자, 귀속소득 통합세 납부자 경우(2014년부터 적용)

❑ **(국외거래) 거래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특수관계자간 수행된 모든 국외거래가 해당되며, 제3자 중개업자를 통한 국외공급거래도 해당**

일반유형	특수관계법인 AForeign Co. ⇔ 특수관계법인 B
적용기준	▪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면 모든 거래가 해당

○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거래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유형	비 특수관계법인 A Foreign Co. ⇔ 러시아 납세자 B
적용기준	▪ 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 * 원유, 유가제품, 철, 비철금속, 비료, 귀금속, 원석 ▪ 거래로 인해 창출된 거래금액이 6천만 RUB 초과시

○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기업과의 거래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유형	비 특수관계법인 A 조세피난처 소재 ⇔ 러시아 납세자 B
적용기준	▪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제도, 키프러스, 홍콩, 리히텐슈타인, 몰타, 모나코, 파나마, UAE, 기타 ▪ 거래로 인해 창출된 거래금액이 6천만 RUB 초과시

❑ 거래별 · 연도별 지배거래 적용기준

❑ **(대상거래) 2011년 이전에는 재화, 용역, 서비스 관련 거래에 대해서만 지배거래를 적용하였으나**

○ 2012년 개정 TP Rule*부터 적용대상이 추가되어 **권리, 지적재산권, 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이전가격과 관련 규정**을 적용

* Article 105.3 p.13

참 고	지배거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거래금액 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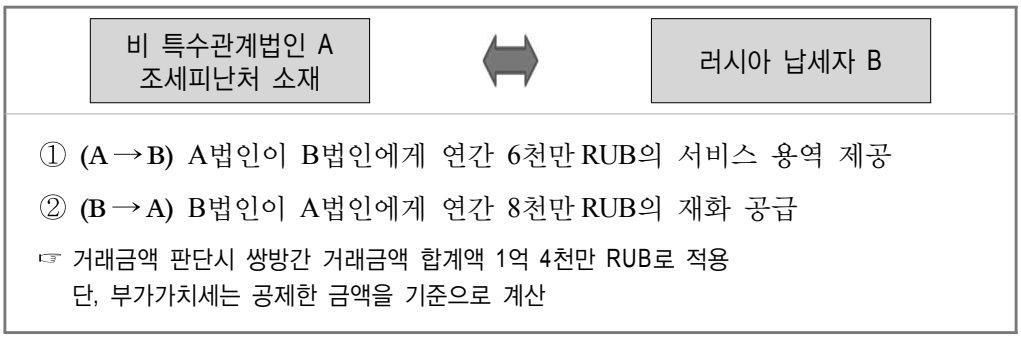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

❑ **러시아의 경우 OECD 가이드라인을 거의 따르고 있으며 2012년 이전에는 전통적인 산출방법 3가지에 제한하고 있었으나**

○ 2012년 이후 TP 관련 세법개정과 함께 거래순이익률법 등 2개의 측정방법이 추가되었음

○ 과세당국이 지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없으나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사용이 우선시** 됨

○ **재판매가격방법이 우선시 되는 경우도 존재**(제품 재판매 거래)

○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률법, 이익분할법은 **상기 방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또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에 사용

○ 특정 거래의 경우 **여러 방법들이 통합되어 사용**되기도 함

❑ 정상가격 산정 방법

○ 2012년 이전 적용 방법

구 분	내 용	지 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질이 반영 ▪ 거의 완전히 유사한 비교대상이 있어야 적용	가 격
재판매 가격법 Resale Minus Method	▪ 매출총이익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방법 ▪ 비교대상기업을 통해 매출총이익을 결정 ▪ 이전가격(매출원가) = 매출액 - 매출총이익	매출총 이익률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 매출총이익을 더하는 방법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방법 ▪ 비교대상기업을 통해 매출총이익을 결정 ▪ 이전가격(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2012년 이후 적용 방법

구 분	내 용	지 표
거래 순이익률법	▪ 이익수준지표에 따라 3가지로 나눔 - 매출·자산기준 → 영업이익률, 자산수익률 - 비용기준 → (비용) berry raito, (원가) 가산율	가 격
(잔여) 이익분할법	▪ 공헌도에 따라 결합이익을 배분 * (결합이익)비교대상기업을 통해 결정된 이익수준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	공헌도

❑ 정상가격 산정 사례 (제3자 비교가능 가격법만 예시)

- 비교값 : **(price 1)** 1, **(price 2)** 2, **(price 3)** 3, **(price 4)** 4, **(price 5)** 5
- **(직접비교)** 만약 해당 동일 과세기간내 해당법인과 제3자 거래가격이 있을 경우 정상시장가격으로 인정
- **(간접비교)** 만약 해당 동일 과세기간내 해당법인과 제3자 거래가격이 없고 공개된 정보를 통해 5개의 비교가격을 찾았을 경우
  - 하위값 : 1.5 [(price1 + price2) / 2], 상위값 4.5 [(price4 + price5) / 2]

바. 이전가격 신고 및 문서화 (TP Notification/Docu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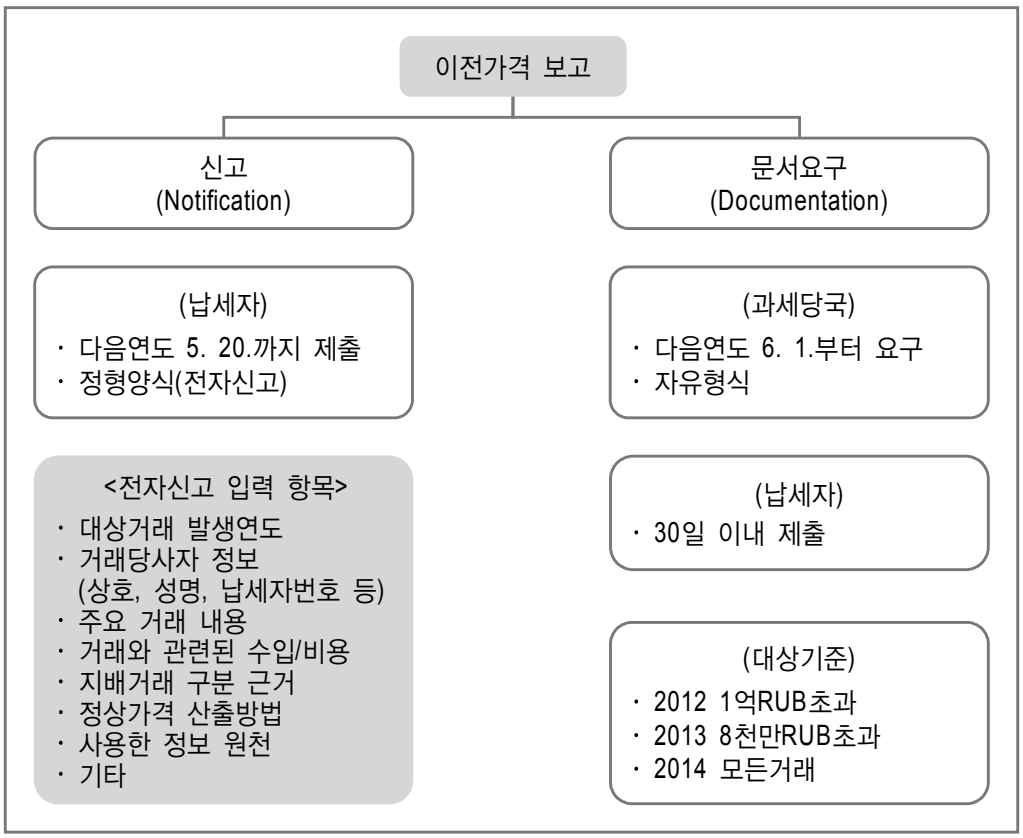

❑ 문서 요구 제외 대상

○ 가격이 반독점 당국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
○ 가격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있고 시장 수준에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른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금융상품거래
○ APA 승인 거래

❑ 2012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관련 서류	개정전	개정후
TP Notification 제출	2013. 5. 20.	2013. 11. 20.
TP Documentation 요구가능 기간	2013. 6. 1.	2013. 12. 1.
2012년 거래 TP 세무조사 제척기간	2013. 12. 31.	2014. 6. 30.

❑ FTS(러시아 국세청)의 이전가격 보고서 실무 가이드라인

○ 다음연도 6. 1. 이전이라도 **FTS의 요청시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입장

* 세법상 다음연도 6. 1. 이전에는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러시아 세법에는 지배거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재화, 용역 및 유사한 상거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

- 계약서에 근거한 거래로 규정하기 보다 여러 개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동일 거래군으로 통합 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

○ 유사업체의 벤치마킹 스터디를 위한 **유사업체의 주요 재무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권고**

사. 이전가격 조정 (Mirror Adjustments)

❑ **납세자는 선정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자발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향의 이전가격 조정은 허용되지 않음**

❑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중 일방에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함에 따라 다른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반대조정은 국내거래와 국외거래를 구분하여 적용**

○ **(국내거래)** 세무조사 결과 국내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 법인에 대해 조정을 허용**

○ **(국외거래)** 세무조사 결과 국내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 법인은 조정 불가**

❑ **이전가격 조정 사례**

국내거래 1	러시아 법인 A	⇔	러시아 법인 B
이전가격 조 정	▪ 세무조사로 **러시아 법인 A에 1억 RUB 추징** ▪ **러시아 법인 B에게 1억 RUB 환급**		

국내거래 2	러시아 법인 A	⇔	러시아 소재 외국법인 지점
이전가격 조 정	▪ 세무조사로 **러시아 법인 A에 1억 RUB 추징** ▪ **러시아 소재 외국법인 지점에 대해 이전가격 조정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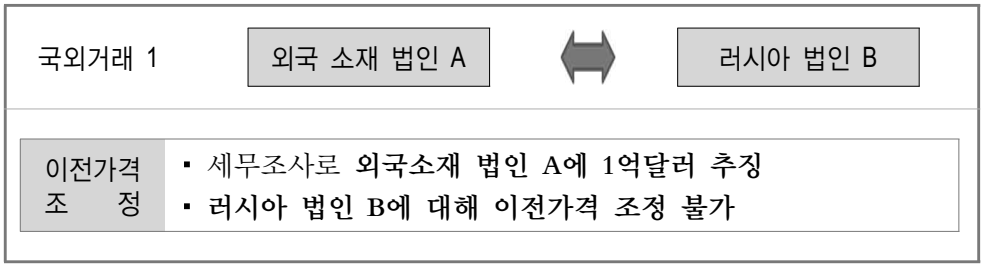

아. 이전가격에 대한 입증 및 벌금

❑ **(입증책임)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 지배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과세당국에 있음**

○ 이를 위해 FTS에서는 2014년 초에 이전가격 조사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연하게 강력한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있음

○ 이전가격 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이루지며 통합조사가 불가능하며 조사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로 예상됨

- 일반적인 세무조사기간은 2개월에서 15개월까지 연장가능하며 통상적으로는 6~8개월간 이루어짐

❑ **(벌금) 이전가격 보고 의무 및 이전가격자료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불이행에 대한 벌금 부과**

○ **연도별 벌금 기준율**

연도	2012년 ~ 2013년	2014년 ~ 2016년	2017년 이후
벌금	추징세액의 0%	추징세액의 20%	추징세액의 40%

○ **유형별 벌금**

- 미납부된 세금의 40%, 최소 30,000 RUB 벌금 부과

▪ 시장가격 미적용으로 인한 미납부세금 적발
▪ 이전가격 문서 미제출, 고의적으로 부정확한 Data 문서에 포함

- 미납부된 세금의 40%, 최소 30,000 RUB 벌금 부과

▪ 마감기한 전 지배거래 미보고, 고의적으로 부정확한 Data 포함

- 1.5백만 RUB : APA(이전가격 사전승인) 체결내용 미준수

5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 (APA)

가. APA 진행 과정 요약(Summary of APA conclusion process)

1) 러시아 국세청(FTS)와 사전 토론

▪ 시간제한은 없고 사전토론과 관련한 **소요비용 없음(강제사항 아님)**
▪ 사전토론을 위한 **이전가격 분석자료 준비 필요**
▪ 납세자는 러시아 국세청(FTS)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전토론 신청 가능**

2)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 이전가격 신청과 관련하여 **U$ 5만불을 비용으로 지불**
▪ 공식적 검토기간 **6개월 ~ 9개월로 규정**(FTS 필요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 상호합의(MAP)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은 크게 연장될 수 있음
* 하나의 거래에 대해 신청 유형(APA or MAP) 및 이해관계자 수 제한 없음

3) FTS의 이전가격 사전승인 업무팀 구성

▪ 1단계에서 **사전토론에 참가했던 팀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4) FTS의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내용 분석

- FTS로부터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이전가격에 대한 토론을 예약**할 수 있음
- MAP의 경우에는 **외국 과세당국과 협의가 개최**됨

5) FTS의 이전가격 사전승인 결론 도출

- FTS 수정요구시 수정안 **제출**(추가 비용 없으며, 재검토에 3개월 소요)
- FTS 수정요구와 관련하여 **요구 횟수에 제한이 없음**
- 이전가격신청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진 후 **5일이내 결과 통보**
- **APA 적용기간 3년**(2년 연장 가능,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 신청한 연도도 적용 가능)
- **APA 거절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을 통해 항소 가능**

나. APA 진행 과정별 주요 내용(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 (Step 1-2) APA(이전사격 사전승인) 신청

○ **APA 신청서류 및 첨부자료(실무 내용 위주)**

- **(신청서류)** APA 대상 거래내역,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ys), 이전가격 산정방식 및 근거, 비교대상 가격 관련 자료
- **(첨부자료)**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자료의 경우 거래별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필수 자료	▪ 지배거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영업활동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납세자 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관련 자료 ▪ 국가세금 납부 증명서, 기타 APA 결정과 관련한 자료
추가 자료	▪ 이전가격 상대회사 재무제료 및 감사보고서 ▪ 납세자 가격정책과 관련한 사내 규정(policy) * 신용도 평가, 관세, 마케팅 정책 등 ▪ 이전가격 대상 거래 계약서 및 기타 거래입증 서류 ▪ 세무회계 사내 규정 및 전기 대비 규정 변동 사항 ▪ 세무회계기준 당기 순이익, 영업외 수익, 비용, 영업외 비용 (세부 내역 포함) ▪ 조직도, 임직원 현황, 임직원 업무분장(이전가격 거래 관련), 외환거래 신고서 ▪ 은행 지급 영수증(이전가격 대상 거래 실제 자금집행 내역), 통관 신고서, 수입·수출 면장

○ **(APA 신청서 접수기한)** 대상 기간 **익년 1월 1일 이후**

○ **(APA 신청 비용)** 최초 신청시 **U$ 50,000** 지불, APA 검토 과정을 거쳐 FTS의 **수정안 제출요구시 추가 발생 비용 없음**(반환 안됨)

참 고	APA 신청서류 및 첨부 자료(러시아 법령 해석 위주)

○ **러시아 연방 세법 제105.22조**에 필수 서류와 기타 서류 명시

①	**(APA 초안)** 거래에 대한 상세 설명, 분석 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논증, 정보의 출처, 벤치마킹 가능한 연구 논문 등
②	지배거래 관련 납세자 경영에 대한 서류와 APA 대상거래 관련 서류
③	법인 설립 관련 서류 사본,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 사본
④	지난 회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서류
⑤	APA 신청과 관련한 비용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APA 체결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서류

러시아 연방 세법 제105.22조에 규정한 기타서류
(the letter of Russian Minstry of Finance or January 12, 2012 NO AO-4-13)

- 지배거래 당사자간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 국세청에서 해당 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정
- 신용도, 관세, 마케팅 정책 등, 납세자 가격정책과 관련한 내부 문서
- 지배거래에 해당하면서 APA 대상이 되는 거래의 계약서, 재화, 용역 서비스 제공의 현금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분석보고서, 의사결정 서류)
-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와 관련한 세무회계정책 관련 서류, 전년도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쳤던 회계정책의 변경내용
  * 감가상각비 적용 방법의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등
- 세무회계상 당기 순이익, 영업외 수익, 비용, 영업외 비용 대한 세부 내역 자료(지배거래와 관련한 계약, 경영사항 등을 포함)
- 지배거래를 다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상세한 직원 의무 규정
- 지배거래 관련 재화 등에 대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 등

- **FTS는 특정 국가를 예로 들어 APA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액 계산을 요구**할 것이고 신청내용이 **기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체 APA를 거부할 가능성 높음**

○ **(사전토론)** 강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요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사전상담시 이전가격 분석자료(TP Analysys) 제출

○ **(경영자문료 APA 신청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

❑ (Step 3) FTS(러시아 국세청)의 APA 신청 처리

○ **(담당부서)** Department of transfer pricing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f the Federal Tax ageny

- 전화번호 : +7(495) 913-05-34
- 팩스 : +7(495) 913-04-58
- 이 메 일 : transferpricing@nalog.ru
- 주 소 : 27381, 모스크바, Neglinnaya, 23

○ **(처리기간)** 공식적 검토기간은 6개월이고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FTS의 필요에 의해 추가 연장가능하며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

  * 상호합의(MAP)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은 크게 연장할 수 있음

○ **(외부조력자)** APA 신청 납세자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

○ **(간편 APA 제도)** 별도의 간편 APA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 (Step 4) FTS의 APA 분석

○ **(심사평가)** 납세자가 제출한 APA신청 내용에 대해 FTS는 다음 내용 위주로 분석을 진행

- 신청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경영상황 분석
- 자체 비교가능 가격정보를 추출하여 APA 신청내용과 비교 대사
- 이전가격 결정원칙과 산정방법에 대한 분석
- 예측 가능한 독립기업간 거래가격과 적용 가능한 이익의 범위

- 검토과정에서 **추가자료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고 **토론을 위한 일정 등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비교가능업체 분석시 사용하는 Data Base** (Information source)

- **(납세자)** 공개·접근가능한 모든 정보 사용(Publicly available source)
- **(FTS)** ①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와의 거래, ②러시아 국내 발생거래라는 2가지 원칙하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정보 사용 (Mandatory data source)

1단계	▪ 세관통계(Customs statistics), 상장기업 공시정보 ▪ APA 관련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업간 비교가능 가격 정보 ▪ 영국기업 Argus 등이 제공하는 국제 곡물, 원자재 가격 정보
	* 1단계에서 데이터가 없을 경우 ⇒ 2단계
2단계	▪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정보 활용 - SPARK, Amendeus, etc.

○ **(Data Risk)** 러시아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납세자가 공개·접근 가능한 정보를 모두 사용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FTS에서 이익률 등을 산정할 때 **비교대상 범위를전술한 2가지 범위내의 데이터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함
- 따라서, 얼마나 적합한 러시아 기업을 찾아서 비교하느냐가 관건이지만 러시아의 제조업 기반은 사실상 외국계 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모수가 작은 것이 현실임
- OECD Rule에 의하면 비교 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 data를 사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한 업체만 비교가능한 시장의 이익률로 인정**
- 이런 이유로 기업 입장에서 **동종·경쟁관계에 있던 기업의 이익률이 특수관계거래로 배제**되고 인지도가 낮은 기업의 이익률과 비교되어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 **(기타)** APA 신청자료의 관세청 공유나 세무조사 등 타목적 사용여부는 비공개하고 있으나 **체결과정 중 정보는 기밀로 처리**

○ **(세무조사와 TP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 과정 중 지배거래가 확인된 경우 **조사기간 중 TP조사는 불가능**하고 관련 거래 내용을 **FTS와 납세자에게 동시 통보**

- FTS는 해당거래에 대해 TP 조사권한 생김(의무조항 아님)
- FTS의 **TP 조사와 상관없이 세무조사는 종결**할 수 있고 지배거래에 대해서는 **추후 FTS에서 TP 조사 실시**할 수 있음

❑ (Step 5) APA의 체결 및 진행

○ **(APA 대상기간) 3년까지 적용하고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세관의 경우 주로 1년 단위로 적용하고 있으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함

○ **(체결연도 적용 여부)** 원칙적으로 체결한 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나 **FTS와 합의에 의해 당해연도 적용 가능**

○ **(신청중 TP documentation)** APA 체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경우 APA와 관련있는 거래에 대해 TP documentation 준비해야 함

○ **(FTS의 체결 거부)** FTS는 APA 체결거부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법원에 항소 가능(Chapter 24 of the Russian Arbitrage Procedure Code)

<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 진행상황 >

- **(납세자 승)** APA와 관련하여 진행중이던 절차가 초기화되어 새로 진행
- **(FTS 승)** 납세자와의 APA는 체결되지 않고 거부됨

○ **(연례보고서) 최대 3년 단위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1년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매년 자료 제출이 요구됨**

> FTS는 회사 이익률과 시장 이익률을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매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한 번 정한 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추어 업데이트하여야 함

❑ **신고조정 (Self adjustment or Taxpayer adjustment)**

○ **(신고기한)** 월말, 분기말, 연말신고 3가지 신고로 분류됨

- **(월말신고-monthly reporting)** 납세자 판단에 따라 익월 28일까지
- **(분기말 신고 - quarter reporting)** 분기말 익월 28일까지
- **(연말 신고 - final reporting)** 연도말 익년 3월 28일까지

○ **(수정·경정청구 기한)** 세무연도 종료 후 3년간 신고 가능

- (적용 단위) 법인세는 연단위로 부가세는 분기단위로 적용됨
- (처리 기한) 실무상 처리기한은 **4~6개월이나 더 연장될 수 있음**

다. FTS의 세무조사와 APA의 관계

세무조사

○ **(최근동향)** 과거와 비교하면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추징세액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과거의 **광범위한 세무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분석 및 세무조사 실시하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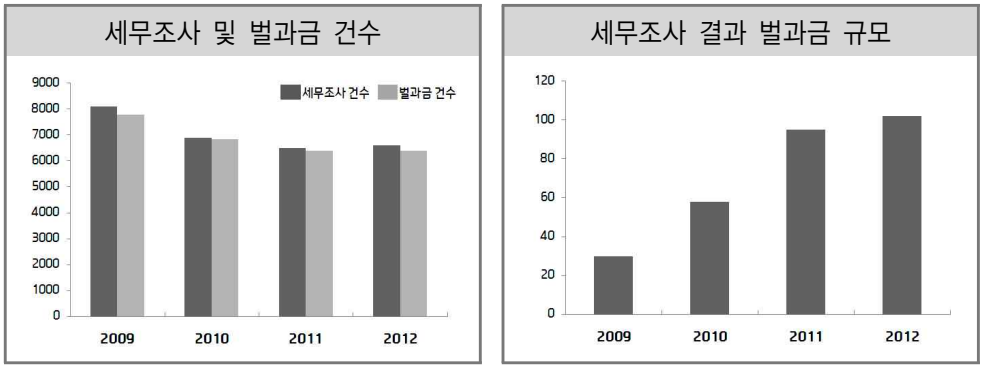

- 세무조사 관련 분쟁에서 **납세자 승소비율**은 점차 낮아져 **'09년에 76%** 였으나 **'12년은 64%로서 16%나 감소**

  * (승소 비율) '09년 76% → '10년 70% → '11년 67% → '12년 64%

- 또한, FTS는 2013년에 **향후 세무조사 방향을 아래와 같이 공언**하였으며 특히 **이전가격과 관련해서는** 2012년 법령을 확대·개정하면서 **2013년 말부터 전담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조사강화 예고**

  ▪ 대기업, 결손기업, 거액의 세액공제, 매입부가세 발생기업 세무조사 집중
  ▪ Peer Analasis : 동종업계와의 비교를 통해 이익률 낮은 회사 집중 조사
  ▪ 매출 증가가 관련 비용증가보다 큰 기업, FTS와 교감이 없었던 기업
  ▪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은 기업(로열티의 경우 2년 단위 조사 빈번)

○ **(조사유형)** 러시아 연방세법(Russian Tax Code 1)에 **Desk Tax Audit와 Field Tax Audit로 구분**되어져 있음

- **(Desk Tax Audit)** 세무신고가 끝난 시점 이후 착수 가능하고 최장 **3개월까지 실시 가능**하며 세무신고자료의 완전성 체크를 위한 것으로 **제한적인 추가 자료만 요청**하는 것이 원칙

  *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0인 상황에서도 실시 가능

- **(Field Tax Audit)** 과거 세무조사 종료시점에서 3년이후 세무조사가 실시되나 이전가격과 관련해서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통상적으로 납세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세무조사 기간은 2개월이며 15개월까지 연장 가능(통상 6 ~ 8개월간 이루어짐)

○ **(조사시 요구사항)** 일반적인 정보부터 많은 양의 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요청사항은 10일 이내에 답변토록 요구**
또한 **임직원을 상대로 질문·녹취**를 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사종결)** 조사 종료시점에 조사종결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 후 통상적으로 2개월간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소멸시효)** 러시아의 **세무조사 소멸시효는 3년**, 즉 2014년도를 기준으로 이전 3개년인 2011년 ~ 2013년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2015년이 되면 2011년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됨

APA와 세무조사 관계

○ **(APA 신청시 세무조사 유예 여부)** 세무조사와 TP 관련 법률은 각각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APA 신청과 세무조사 유예는 관계 없음

○ **(세무조사 중 APA 신청)** APA 신청 또한 세무조사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중이라도 APA 신청은 가능함

○ **(APA 관련 거래와 TP 조사)** 전술한 바와 같이 TP와 세무조사는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APA 체결된 거래라 하더라도 TP조사 가능**

- 다만, 기업이나 관련 회계법인에서는 FTS가 APA와 TP조사의 중복실시로 인한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TP조사 제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수준

* (TP 규정) '12년 이전 세법 내 2개 조항 → '12년 이후 1개 Chapter 다수 조항

나. MAP 관련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 **(동향)** FTS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 불가 등 폐쇄적 특성 때문에 상호합의와 관련한 **경험이 없고** 만약 상호합의가 진행된다면 **재무부 의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이런 이유로 인해 러시아 소재 주요 회계법인에서는 러시아 진출기업에 대한 세금 컨설팅 시 **상호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재무부와 사전 의견 교환을 한 후에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

○ **상호합의 개시 요건 등** [법령 해석에 따른 의견]

- 조세법 처벌법 등으로 고발된 경우 → **상호합의 개시 가능**
- 수익적 소유자로 과세된 경우 상호합의 당사자국 → **상호합의 가능**

> 당초 헝가리로 배당되었으나, 조사시 미국법인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헝가리와 상호합의 가능 여부

- 상호합의 개시시 **징수유예 등 가능여부** : 납세자 규모에 따라 징수유예 가능
- 과소자본세제로 비용 부인된 이자비용 : **상호합의 개시 가능**

○ **상호합의 분석 등**

- 조사 담당자가 상호합의시 참석 가능 여부 → **참석 가능**
- 조사 담당부서에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 부과제척기간 특례조항 및 가산세 경감 규정 → **없음**

  *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3년

○ **불복절차와의 관계 등**

- MAP와 국내 불복절차를 동시에 제기 가능 여부 → **가능**
- 국내 불복절차 결과와 MAP와의 관계 → **관계 없음**

6 과소자본세제

❑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및 배경

-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대부분 국가에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되나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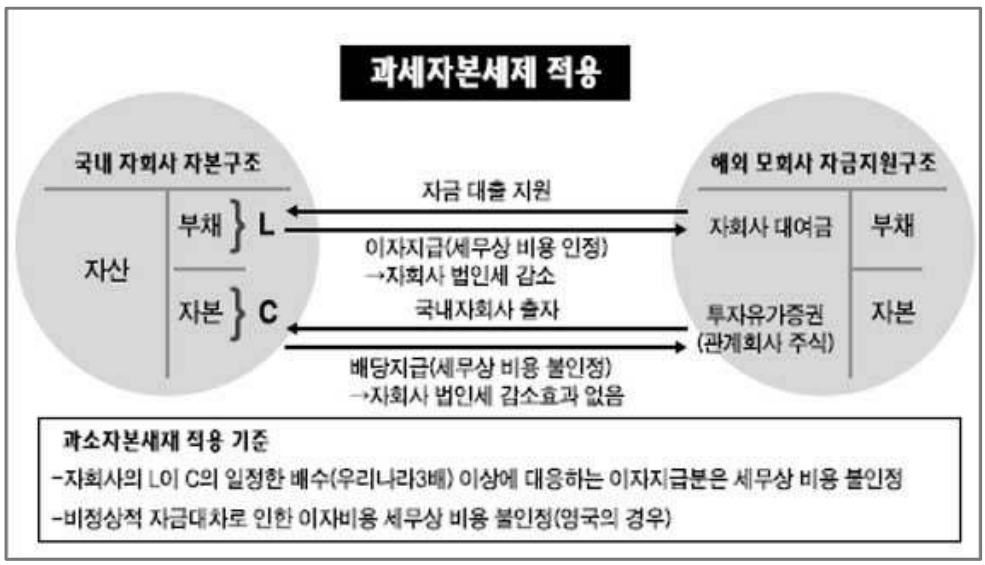

- 출자는 적게 받고 그 대신 차입을 늘여 당해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세부담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출자자본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

❑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 차별 금지 조항과의 관계

○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약 제2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다른 내국법인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과소자본세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자의 손금산입을 내국법인보다 더 제약하는 제도이므로 조세조약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나

○ OECD 모델조약에 의하면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가 독립기업 간 원칙에 의한 것인 한 조세조약의 차별 금지조항에 위반되지 않음

- OECD 모델 조약 제24조 주석 57문단은 외국인투자기업 차별 금지 조항이 “이자비용의 과소자본세제에 적절하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 조항이므로 손금산입에 관한 한 이 논점을 한결 더 특정하고 있는 제4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음[5)]

○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 및 효과

- 러시아 세법상,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 차입금은 다음과 같음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즉,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모회사로부터 차입금)
  - 상기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러시아내 자회사를 통한 차입금
  - 국외지배주주 또는 러시아내 자회사(2번)의 지급보증 및 담보를 통한 차입금

5) 이창희, <과소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 법학연구 제 48권 제4호 통권 제145호(2007년 12월) pp.63-87 ISSN 2005-476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p.81

- 이러한 상기의 세법상 명시된 총차입금이 자기자본 총액을 3배 이상 초과할 경우(은행 및 리스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경우 12.2배), 이자비용은 손금 불산입되며,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발생

○ 과소자본세제 적용 확대 흐름

- 기존에는 다음 두 가지 상황의 경우, 법원 판결은 과소자본세제 미적용을 합법으로 보았음
  - 해외 자회사(모회사가 동일하며,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음)가 제공한 차입금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미적용 : 제269조제2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동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 미적용 대상이고 러시아 법원도 이러한 해석을 인정해왔음
  - 러시아와 개별 국가 간에 체결한 이중과세조약(Double Taxation Treaty, DDT)의 차별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러시아 과소자본세제에 미적용 : DDT는 내국법인 러시아 과소자본세제에 우선한다고 봄
  - 즉 최근까지 위와 관련된 세법 판례는 납세자를 지지하는 방향이었음
- 최근 상기 상황에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즉, 과세 당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과 결론이 담긴 판례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과소자본세제를 지지하는 판례들 >

○ 모스크바 중재법원(Mowcow Arbitrazh Court) '11.8.5, 해외 자회사가 제공한 차입금에 대해 과소자본세제 적용 결정

- 사실관계 : ○○○ Narianmarneftegaz(이하 “러시아 회사”은 ConocoPhillips 그룹의 자회사이자 미국 납세자인 해외 법인으로부터 대출을 함. 러시아 회사에 대한 ConocoPhillips의 간접 지분은 20%를 초과하였지만, 대출을 제공한 해외 법인은 직·간접적으로 러시아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러시아 회사는 러시아 세법 제269조 제1항에 설정된 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이자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함

- 법원의 결정 : 법원은 러시아 회사 지분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ConocoPhillips가 사실상 대여자라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의 이자비용 손금산입 불가에 대한 결론을 지지함
- 위 사건에 대한 러시아 최고중재법원의 확정 판결 (2012.6.21) : 해외 법인이 러시아 회사에 제공한 차입금에 대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을 확정
- 다음 러시아 최고중재법원 사이트에서 위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의 전문을 찾아볼 수 있음
  (http : //kad.arbitr.ru/?id=6a50b48b-8351-445e-968b-531dcb26c749)

○ 러시아 최고중재법원(Russian Supreme Arbitrazh Court) '11.8.12, 이중과세조약의 차별 금지 조항은 과소자본세제에 우선하지 않음
- 사실관계 : 해당 러시아 법인은 사이프러스 및 스위스의 자회사로 부터 차입을 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모두 손금산입했음. 세무서는 이러한 차입금을 러시아 세법 269항에 명시된 통제대상차입금(controlled debt)으로 간주하고, 해당 이자비용은 법인세 목적상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이 아닌, 배당금지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납세자는 러시아와 사이프러스/스위스의 이중과세조약상 차별 금지 조항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과소자본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입장을 방어했음
- 법원의 판결 : 1차/2차/3차 소송에서 해당 법원은 모두 이중과세조약이 러시아 내국법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최고중재법원은 이러한 모든 판결을 뒤집고, 이중과세조약의 차별 금지 조항은 러시아 과소자본세제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함

○ 검토 및 유의사항

- 상기 사례에 한하기는 하지만 러시아 최고중재법원의 최근 판결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대상 확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분명함
  - 첫 번째 사례를 통해 볼 때, 러시아 법원은 기존과 달리 과소자본세제규정(제269조제2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해외 자회사가 제공한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예상
  - 두 번째 사례를 통해 볼 때, 러시아 과소자본세제 미적용 근거를 단지 이중과세조약의 차별 금지 조항으로 두어 방어할 경우, 러시아 과세당국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특히 러시아가 OECD에 가입할 경우, OECD 모델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조약의 차별 금지 조항이 과소자본세제를 제약하지 않으므로 DDT에 근거를 둔 과소자본세제 미적용의 정당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임

-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함
  •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면, 대출 관련 이자 비용이 배당금 지급으로 간주되어 러시아 세법상 최소 5%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만약해당 배당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약 20%의 벌금 및 지연납부 이자가 추가로 가중됨
  • 따라서 그룹 내부 또는 외부 대출을 이용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차입금이 러시아 세법 상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일 경우, 사전에 해당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감안하여 자금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상기 사례와 관련한 향후 세무 당국과의 소송에 대비하여
  •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대출일 경우, 모회사의 역할이 개입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 이중과세조약의 차별 금지 조항이 과소자본세제 규정에 우선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논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7 법인재산세 (Tax on the Property of Organization)

❑ 개관 및 근거 법령

○ 러시아의 법인재산세는 광역지방세로 러시아연방세법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규정도 적용

❑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러시아 기업 : 동산 및 부동산

○ 러시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 동산 및 부동산

○ 러시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 러시아 내 부동산

○ 주요 면세대상 : 농업기업의 재산, 위성통신, 토지 등

❑ 과세표준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대차대조표상 연간 평균재산 가치(the mean annual value)를 기준으로 하며, 각 회계연도 중 평균재산 가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됨

- (B/2 + I + E/2)/4

* 'B'는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서의 재산 가치
'I'는 각 분기 첫날의 재산 가치
'E'는 기간 말의 재산 가치(예 : 분기, 반기, 9개월, 1년 등)

○ 러시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잔존평가 가치(inventory value)임

❑ 과세기간, 회계기간 및 세율

○ 과세기간은 1역년이며, 회계기간은 분기, 반기, 9개월, 1년임

○ 세율은 러시아연방세법에 규정된 2.2%가 최대 수준으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됨

- 모스크바, 상뻬재르부르그 등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최고세율인 2.2%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내 투자를 조건으로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재산세 면제

❑ 세금 납부

○ 납세자는 각 회계기간마다 재산세를 선납부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중 세액은 다음과 같음

- 과세표준이 연간 평균재산 가치인 경우 : 회계연도 중 평균재산 가치 ×세율
- 과세표준이 잔존평가 가치인 경우 : 1/4 x 잔존평가 가치×세율

○ 과세기간의 총 세액은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 × 세율

○ 납세자는 예정신고 기간의 30일 내로 분기별 세액을 신고해야 하고, 과세연도 익년 3월 30일 전까지 과세기간 총 세액을 신고해야함

- 각 지방정부에 따라 세금납부 기한은 수정될 수 있고, 몇몇 정부는 재산세 선납부를 면제해주기도 하므로 지방별로 다르게 적용됨을 유의

8 사회보장세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 개관

○ 고용계약 또는 법적계약이 맺어진 개인이 국가연금, 사회보험,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대가로 지불하는 기금

○ 사회보장세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

- 국가연기금(State Pension Fund)

- 사회보장기금(Social Insurance Fund)
- 의료보험연방기금(Federal Obligatory Medical Insurance Fund)
- 의료보험지방기금(Local Obligatory Medical Insurance Fund)

○ 국가연기금과 사회보장기금은 기여금 집행의 책임이 있음

❑ 납세자

○ 자연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보지 않는 자연인

- 근로자의 보험기여금 납부의무는 개인의 과세상태와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음

○ 개인사업자, 변호사

○ 2012년부터 국가연기금 납부의무가 러시아 고용주에서 외국기업들까지 확대됨

- 러시아에 대표사무소나 지점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 러시아에 대표사무소나 지점이 없는 경우 외국기업들에게 국가연기금을 납부하게 할 장치는 없음
- 러시아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들의 임금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10%의 국가연기금을 부담하여야 함
- 고소득 전문 인력 비자 취득자(Highly-Qualified Specialist; HSQ)는 연기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됨
-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기여금과 관련된 연금이나 기타 비용의 청구를 주장할 수 없음

❑ 과세표준

○ 개인이 고용계약이나 사회적 계약에 의해 현금이나 현물로 받은 임금(보수)에 근거해 계산됨

○ 보수에는 급여 이외에도 본인 또는 그의 가족에게 공공서비스, 식사, 휴가비, 교육비, 비강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등의 형태로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

○ 보험기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보수의 예
- 고소득 전문 인력 비자를 가지고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하지만, 상해보험 납부의무는 있음)
- 작가의 동의와는 별개의 재산권의 양도 또는 기타의 소유권과 관련된 보수
- 주거용 부동산 또는 자동차 대여와 같은 재산의 사용과 연관된 보수
- 출산휴가, 실업급여, 병가수당을 포함한 국가 수당
- 미사용 휴가 보상비를 제외한 일정한 제한 내의 여분의 보수
- 법정규정내의 출장비
- 직업훈련비
-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지급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보수
- 1역년 동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4000RUB까지의 물적 원조
- 특정한 보험기여금

❑ 세율

○ 보험기여금은 각각의 근로자들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됨

○ 2012년 이전에는 해마다 조정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음

구 분	2011년	2012년
State Pension Fund(국가연기금)	26%	22% + 보수상한선 초과분의 10%
Social Insurance Fund(사회보장기금)	2.9%	상한선 내의 보수의 2.9%
Federal Obligatory Meducal Insurance (의료보험연방기금)	3.1%	상한선 내의 보수의 5.1%

구 분	2011년	2012년
Local Obligatory Medical Insurance fund (의료보험지방기금)	2%	0%
Total	34%	30% + **보수상한선 초과분의** 10%
Cap in RUB / USD(상한선)	463/15.4	512 / 17.1
Maximum liability per employee in RUB/USD(근로자당 최대 의무금)	157.4/5.2	153.6 / 5.1 + 보수상한선 초과분의 10%

○ 2012년부터는 상한선을 넘는 소득은 10%의 추가적인 연기금을 부담해야함

○ 상한선 이하의 소득은 기존의 34%에서 인하되어 종합적으로 30%의 세율이 적용됨

○ 14-27%의 낮은 세율은 제한된 특정 납세자 범주(넓게, IT, 사회농업계층)에 적용되며 상한은 동일함

○ 10%의 추가적인 연기금은 위의 특정 납세자 범주에 적용되지 않음

❑ 납부와 신고(Payments and reporting)

○ 과세기간 : 1역년

○ 신고기간 : 각 분기

○ 신고서의 제출 날짜

- 국가연기금, 의료보험연방기금 : 신고기간 이후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 사회보장기금 : 신고기간 다음 달의 15일까지

○ 납부는 다음 달의 15일 이전까지 달마다 납부할 수 있음

○ 납부기한은 보통 은행으로의 봉급 입금일과 같지만, 다음 달 15일 이전에는 납부되어야 함

❑ 개정 사항

○ 3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회보장세 구간이 변동되어 과거 512,000 루블에서 568,000 루블로 변경(관련법규 : Russian government Resolution No.1276 of 10.12.2012)

- 이에 연간 568,000 루블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30%의 사회보장세 납세의무가 있음

> **(시사점)** 상기와 같이 법인세, Property tax,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관세, 사회보장세 등의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세무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예를 들어 관세의 경우 전자 신고서로 제출시 행정처리 비용이 감면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 요망되며, 유형자산의 경우도 과거 등록을 한 것에만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자산이 운영되는 월의 익월부터 감가 상각이 가능한 점을 파악하여 활용해야 함.

9 기타 주요 세제

가. 소비세

❑ 납세자

○ 납세자는 러시아에서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러시아로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 개인사업자이다.

❑ 소비세 대상 물품

○ 궐련과 담배 제품

○ 오토바이

○ 브랜디 알코올을 제외한 모든 원료로 제조된 에틸알코올

○ 기름 제품 및 기름 제품의 거래

- 휘발유(gasoline)
- 자동차용 기름(motor oil)
- 디젤유
- 천연가스와 가공하지 않은 유류 및 가스에는 부과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 Oil and gas taxation을 참고

○ 특정 알코올 베이스 제품들

- 알코올 함유량이 9%이상인 알코올 함유 제품(용해제, 에멀젼, 현탁액 및 기타 액체 형태의 제품)
- 주류(식용알코올, 보드카, 증류주, 꼬냑, 포도주 및 기타 1.5도 이상의 식용 알코올 제품, 다만, 포도주 원료는 제외함)
- 맥주

❑ 소비세 대상 물품의 수출입

○ 러시아의 소비세 평가에 있어서의 destination principle에 따라 소비세 대상물품이라도 러시아 외부로 수출하는 경우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 면세 혜택을 위해서 정해진 세관 수출 절차를 따르고 물품의 수출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해야함

○ Custom Union 가입국으로부터 수입된 재화의 소비세 납부 절차는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

❑ 세율(Tax rates)

○ 소비세 대상 품목에 따라 다양함

소비세 물품의 종류	세 율 (측정 단위에 대한 백분율과 [또는] 루블과 코페이카 (역주 : 화폐 단위, 100코페이카=1루블)로)
모든 종류의 원료로 제조된 에틸알코올	무수(無水) 에틸알코올 1리터당 21루블 50 코페이카
에틸알코올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알코올 제품과 알코올 함유제품	소비세물품에 함유되어 있는 무수(無水) 에틸알코올 1리터당 159루블
에틸알코올 함유량이 9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인 알코올 제품	소비세물품에 함유되어 있는 무수(無水) 에틸알코올 1리터당 118루블
포도주(자연산포도주, 샴페인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제외)	1리터당 112루블
자연산 포도주	1리터당 2루블 20코페이카
샴페인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1리터당 10루블 50코페이카
0.5퍼센트 이상 8.6퍼센트 이하의 정상적인 에틸알코올 양을 함유한 맥주	1리터당 1루블 90코페이카
8.6퍼센트 이상 정상적인(표준에 맞는) 에틸알코올 양을 함유한 맥주	1리터당 6루블 85코페이카
파이프 담배	1킬로그램당 676루블
흡연용 담배	1킬로그램당 277루블
여송연	1개당 16루블 35코페이카
작은 여송연	1000개당 200루블
필터가 있는 여송연	1000개당 78루블 + 매매가(관세가액 + 관세)의 8% 단, 매매가의 25%에 미달할 수 없다
필터가 없는 여송연, 궐련	1000개당 35루블 + 매매가(관세가액 + 관세)의 8% 단, 매매가의 25%에 미달할 수 없다
엔진출력 67.5kW(90마력) 이하의 승용차	0.75kW(1마력)당 0루블

소비세 물품의 종류	세 율
엔진출력 67.5kW(90마력) 이상, 112.5kW (150마력) 이하의 승용차	0.75킬로와트(1마력)당 16루블 50코페이카
옥탄가 80이하의 휘발유	1톤당 2,657루블
옥탄가 80초과의 휘발유	1톤당 3,629루블
디젤유	1톤당 1,080루블
디젤과 기화기(연료분사장치)엔진오일	1톤당 2,951루블
직접 증류 석유	1톤당 2,657루블

○ 세율은 조세 당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조정됨

○ 세원은 그 세율이 종가세(판매가격의 일정비율)인지 종량세(i.e. 단위당 정해진 양)인지에 따라 소비세 대상 물품의 양이나 가격으로 결정됨

○ 소비세는 판매일에 청구되며 그 판매일은 물품이 급송된 날짜를 의미함

○ 소비세는 비공제가 원칙이지만, 소비세 대상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화의 수입 또는 구매에 지불한 소비세는 공제 받을 수 있음

❑ 납부와 서류 정리(Payments and Filings)

○ 과세기간 : 1역월

○ 세금납부와 세금신고서 제출기한
- 소비세 대상 품목의 종류에 따라 다양함

○ 소비세의 통지와 납부
- 납세자의 지역을 관할하고 소비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서에서 이루어짐
- 국내제품이나 수입제품 모두 특정 주류나 담배 제품은 세금이 선지급되어야 하며 소비세 도장이 요구됨
- 소비세 도장은 제품이 생산된 장소에서 제품이 판매되기 이전에 소비세 대상 물품에 부착되어야 함

나. 광물추출세 (MET, Mineral extraction tax)

❑ 개관

○ 기름이나 가스가 아닌 광물의 추출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관련된 세금 납세자

○ 광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 과세표준(Tax base)

○ 추출된 광물자원의 가치

○ 가치는 그 광물자원의 양과 부가가치세, 관세, 통관비가 포함된 가격, 또는 이윤세 납부를 위해 보관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생산비용에 의해 결정됨

○ 일반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생산비용이 과세표준으로 사용됨

○ 천연광물이나 토양으로부터 재생된 귀금속의 가치는 납세자의 이달동안(또는 이달의 매출이 없는 경우 이전 달)의 화학적인 단금속 판매가격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함

○ 과세기간동안 특정 광물 자원의 매출이 없는 경우, 납세자는 추출한 광물의 가치를 생산비용에 근거해 계산해야 함

❑ 세율(Tax rates)

광물자원의 종류		세 율
석탄(Coal)	아 탄	RUB 11
	무연탄(Anthracite)	RUB 47
	코크스(Coke)	RUB 57
	기 타(Others)	RUB 24

광물자원의 종류	세 율
철금속의 표준광석	4.8%
금을 포함한 정광과 기타 중간 생산품	6%
금을 제외한 귀금속을 포함한 정광과 기타 중간 생산품	6.5%
하석과 보크사이트를 제외한 비철금속의 표준광석	8%
다이아몬드와 기타 보석과 준보석	8%

❑ 수출 관세(Export customs duties)

광물자원의 종류	세 율
석탄, 아탄 또는 토탄으로부터 제조된 코크스와 세미코크	0% or 5%
다이아몬드	0% or 10% or 15%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보석	10% or 15% or 20%
구리, 다양한 종류	5%
구리 폐기물 및 잔여물	0%
정제되지 않은 니켈	0% or 5%
니켈 폐기물 및 잔여물	5%
알루미늄 합금	0% or 10%
알루미늄 폐기물 및 잔여물	0%
납 폐기물 및 잔여물	5%
아연 폐기물 및 잔여물	5%

❑ 부가가치세 공제(VAT Exemption)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광업회사 또는 폐물이나 폐기물로부터 금속을 생산하는 회사가 러시아 중앙은행 또는 권한 있는 은행의 귀금속 연방기금에 판매하는 매출

○ 부가가치세 환급의 조건 및 절차

- 부가가치세 환급 Tax Code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생산과 관련된 입력 부가가치세(input VAT)는 일반적으로 환급 가능

- 환급은 보통 입력부가가치세와 연방예산에 지불할 수 있는 다른 세금을 상계함에 따라 이루어짐

○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

- 폐물, 철금속과 비철금속의 판매
- 광석, 정광, 다른 공업상품, 귀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의 판매
- 광업회사 또는 연방귀금속기금에 금속이나 돌을 생산하는 회사의 귀금속, 보석 판매
- 러시아 중앙은행과 권한 있는 은행의 귀금속, 보석 판매
- 가공과 이후수출판매를 위한 가공하지 않은 귀금속의 판매, 단 가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제외됨
- 가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가공회사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생산과 관련된 입력 부가가치세(input VAT)는 환급될 수는 없고, 비용으로서의 일정액공제제가 적용됨

다.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세제

❑ 개관

○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의 24% 가량, 확인된 석유의 5-6%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이 러시아 GDP 의 30%, 원유, 천연가스, 기름생산물이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기름 및 가스 산업이 최근 러시아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적용되는 각 세법에 대해서 별도로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이윤세

○ 천연 자원 매장량 평가, 실행 가능성 연구, 지질학적 정보 획득 등 개발 라이센스를 취득에 관련된 비용은 라이센스의 취득 비용 인식하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라이센스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함. 단, 라이센스 입찰 참여에 관련된 비용은 생산 및 판매비용으로 인식하며, 2년에 걸쳐 상각함. 라이센스 입찰에서 취득에 실패할 경우, 관련 비용은 입찰한 월로부터 2년간 상각함.

○ 천연 자원 매장량 평가 및 탐사 관련 비용은, 성공 여부에 관계 없이, 작업 완료 후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 처리함. 각 탐사 프로젝트마다 구분된 세무회계를 해야 함.

○ 천연자원 추출을 위한 토지 구획 준비 비용 및 추출 플랜트 건설 운영에 의한 환경 훼손의 복구 관련 비용은 작업 완료 후 2년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 처리함. 다만, 비용 처리 기간 중에 플랜트가 해체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비용 처리 되지 아니함.

○ 유정 폐기 관련 비용은 유정 폐기 다음 월의 1일부터 12개월 동안 균등하게 비용 처리함. 미래 발생 비용의 비용 처리는 불가하며, 실제 발생 비용은 가능함.

○ 석유 및 가스 관련 산업 주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

○ 석유, 가스콘덴세이트, 천연가스의 수출은 영세율, 국내 판매는 18% 세율을 적용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및 환급 대상인 러시아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탄화수소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 탐사 및 생산에 관계되는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해 열거하고 있음

❑ 광물추출세(MET, Mineral extraction tax)

○ 지하, 생산폐기물로부터 석유, 가스를 포함한 광물을 추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됨

○ 상업적으로 광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라이센스 취득을 요함

○ 과세 표준은 추출된 물량만 혹은 추출된 물량과 광물의 가치의 동시 고려에 의해서 결정됨. 광물의 가치 결정시 판매 가격에서 VAT, 관세, 운송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되며, 판매가 없을 시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함.

○ 각 광물 자원 종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음

광물자원		MET 세율(RUB per ton)		
석 유		2012	2013	2014
		446	470	
		계수 (P-15) * R/261 * D 로 조정 P : 우랄산 혼합원유 과세기간 달러표시 평균가격 R : 러시아중앙은행발표 RUB/USD 환율 월평균 D : 고갈요인		
가스콘덴세이트		556	590	647
천연가스	Gazprom사, 50% 계열회사	509	582	622
	기타 생산자	251	265	278
부수가스, 광물자원의 표준손실, 고점성석유 등		0		

○ 아래의 지역에서 석유를 추출할 경우, 누적 생산량 및 개발 기간 한도 기준을 만족할 때, 0% MET 세율을 적용함

- The republic of Sakha, Irkutsk and Krasnoyarsk regions
- the Arctic Circle 의 북쪽 지역

- the Sea of Azov and the Caspian Sea, Sea of Okhotsk and Black Sea
- 위도 65도 이상이고, Yamalo-Nenets Autonomous District 내에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위치한 지역(Yamal Peninsula 제외)

○ MET는 월별로 산정되며, 다음 보고 월의 25일 이내에 납부함.

❑ 소비세

○ 현재는 가솔린, 엔진오일 및 디젤에만 적용되고, 석유, 가스콘덴세이트, 천연가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러시아 내에서 행해진 다음 형태의 석유제품 거래를 소비세 대상으로 함
- 자체 생산한 소비세 대상 석유제품의 판매(수출의 경우 제외)
- 톨링계약(원료소유자-원료공정처리자 간 계약) 에 의해 생산된 소비세 대상 석유제품을 원료소유자에게로 이전하는 행위(수출의 경우 제외)
- 소비세 대상 아닌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자체 생산한 소비세 대상 석유제품을 회사내에 부서간 이전하는 행위
- 톨링계약을 기반으로 원료공정처리를 위해 자체 생산한 소비세 대상 석유 제품을 이전하는 행위
- 소비세 대상 석유 제품의 수입

○ 소비세 세율은 다음과 같음

소비세 대상 품목		소비세 세율(RUB per ton)			
		2012.1.1. - 6.30		2012.7.1. - 12.31.	
가솔린/디젤		가솔린	디젤	가솔린	디젤
	1.2등급	7725	4098	8225	4300
	3등급	7382	3814	7882	4300
	4등급	6822	3562	6822	3562
	5등급	6822	3562	5143	2962
엔진오일		6072			
직류 가솔린		7824			

○ 다른 소비세 대상 석유 제품의 원재료로 소비세 대상 석유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그로 인해 지불한 소비세만큼 세금을 차감할 수 있음

○ 직류 가솔린(straight-run gasoline)의 생산자와 공정처리자가 과세 당국에서 발행하는 특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생산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소비세를 평가하지만, 공정처리자에게 부과하지 않으며, 생산자는 평가한 소비세만큼 세금을 차감할 수 있음

❑ 생산 공유 체계

○ 생산공유계약(PSAs,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은 러시아 정부가 투자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지하 광물 자원을 개발, 생산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되, 투자자는 개발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자신의 부담으로 하고, 생산물은 정부와 공유하는 계약임

○ 두 가지 과세 방법이 있음.

- 표준법(standard method)
  - 투자자는 생산공유계약 하에서 추출한 광물에 대한 광물추출세를 부담함. 생산된 광물의 가치(광물추출세 제외)에서 탐사, 개발비용, 기타 변제 가능한 비용과 '보충 생산'을 차감한 잔여분을 생산공유계약에 따라 투자자와 정부가 분할하고, 투자자는 잔여분의 자기 지분만큼에 대해서 이윤세를 부담함. 보충 생산은 전체 생산량의 75% (대륙붕의 경우 90%) 이하이어야 함
- 직접법(direct method)
  - 투자자는 생산공유계약 하에서 추출한 광물의 최대 68%를 가질 수 있음. 투자자는 이윤세, 광물추출세, 물세 및 토지세가 면제됨.
  - 생산공유계약 하에서 수입, 수출되는 상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생산공유계약 하에서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재산세와 운송세가 면제됨

라. 개인소득세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과세기간

○ 러시아연방 내 거주자(tax resident)로서 자연인
- 러시아연방 내 거주자는 연간 최소 183일 이상 러시아 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정의됨
- 러시아연방 내 거주자는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 비거주자(tax non-residents)
- 거주자에 속하지 않는 개인으로 러시아연방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 과세기간은 1역년임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현금이나 등가보상물, 자산처분권리의 형태로 취득한 소득 및 물질적 이익의 형태(제212조)로 취득한 모든 소득

○ 세율에 따라 분류되는 각각의 소득에 대응하여 과세표준도 각기 다르게 정의됨
- 제224조제1항에 정한 세율(13%)이 적용되는 소득 : 과세표준은 제218-221조에 규정한 소득공제액만큼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이 때, 과세기간의 세금공제액이 소득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은 영세율이 적용됨
-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소득액으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 외화로 표시된 납세자의 소득(제214.1, 214.3, 214.4, 218-221조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은 실제로 소득을 취한 날(실제로 비용이 지출된 날) 정해진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환율에 따라 루블로 환산

❑ 비과세소득

- 정부보조금, 실업급여, 법정연금급여, 유아출산 및 사망에 대한 보조금
- 법정 보상금이나 배상금, 법에 따른 주택, 시설, 석유의 무상지원
- 해고수당, 연가보상비, 근로자 전문기술훈련비, 전근비(교통비, 주거비)
- 이혼별거수당
- 국가적 재난에 대한 원조
- 환자나 16세 미만 어린이의 요양소, 진료소 통원비 지급
-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진료비로 유보된 적립금에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
- 자신 및 그 가족의 토지에서 부업으로 행하는 가축사육, 채소 및 화초 재배, 양봉 등에서 얻는 소득
- 농경가구로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생산 판매하는 농산물
- 약초, 산딸기, 호두, 버섯 등의 야생식물을 채집하여 야생식물매입 허가가 있는 도매업자에게 판매
-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산재평가, 합병 등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
- 등록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로부터 가족 1인당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나 고아에게 지급되는 금액
- 은행예금이자, 정부 국채이자
- 4,0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①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의 증여 금품, ②정부주최 각종 대회의 입상 금품, ③현직근로자나 불구, 고령으로 퇴직한 전직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지급하는 물질적 지원, ④상품 광고목적의 경기, 시합 입상 금품
- 러시아 기업 주식 매각 시 개인소득세 면제 (Federal Law No.395-FZ of 28 December 2010에 따라 세법 개정) :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charter capital의 지분)의 매각(주식상환)일자 기준으로 납세자가 그 주식을 소유권을 기반으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러시아 기업의 charter capital의 지분 및 러시아 세법 제284.2.2에 열거된 주식의 매각(주식상환)에서 발생한 수익 소득공제

○ 표준소득공제(Standard Tax Deduction) (제218조)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법정후견인(혹은 보호자)은 그들의 첫째, 둘째 아이는 각각 매월 1,400루블씩, 셋째 아이(또는 그 이상)와 장애 아이는 각각 매월 3,000루블씩 공제 가능 (단, 과세기간 동안 공제 누적액이 총 280,0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
- 장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특정 유형의 개인은 500루블 또는 3,000루블의 공제 가능

○ 사회소득공제(Social Tax Deduction) (제219조)

- 과학, 문화, 교육, 공중위생, 사회보장, 종교단체와 영유아시설, 체육시설 등에 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부금
-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24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 각 자녀 당, 연간 50,0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의료비 및(또는) 교육비로(자녀에 대해서는 의료비만 적용, 교육비는 상기와 같음) 연간 120,0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재산소득공제(Property Tax Deduction) (제220조)

- 다가구주택, 아파트, 민영주택, 별장, 전원주택, 대지 및 그 지분을 3년 미만 보유하고 1,000,000루블 이하의 금액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 재산의 3년 미만 보유 및 250,000루블 이하의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
- 상기 다가구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거나, 그 외 재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한도 없음)
- 다가구주택, 아파트의 건설 및 매입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 및 취득자금 차입금의 이자비용으로서 총 2,000,000루블 한도

○ 전문소득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 (제221조)

- 문학작품, 사진, 그래픽, 영상, 음악, 디자인, 발명, 산업모델 등의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입증가능한 발생비용을 전액 공제하나, 이러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항목별로 20~40%의 금액을 기본 공제함

❑ 세율

구 분	거 주 자		비거주자	고소득 전문인력 비자취득자[6]
기본세율	13%		30%	13%
소득에 따른 세율	배당소득	9%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5%	
	기타 (제224조 제2항)	35%		

* · 각종 대회나 경기, 혹은 상품선전목적의 행사에 참가하여 얻은 상금으로서 4,000루블 초과액
  · 은행예금이자(대부금이자) 중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5%p (대부금이자는 2/3) 초과한 금액(루블화 기준)과 외화계정의 이자수입 중 연 9%를 초과하는 금액(외화 기준)

❑ 개인소득세 산출 및 납부절차

○ 세액산출절차

- 과세표준 = 소득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납부세액 = 산출세액 －원천징수세액 －선납세액
- 산출세액은 루블화 단위로 산출하고, 50코페이카(copecks)미만은 절사하며, 50코페이카 이상은 반올림함

❑ 이중과세 방지

○ 의의(제1항)

- 러시아연방의 거주자인 납세자가 다른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하는 국외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중과세 방지에 관하여 해당계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러시아연방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

6) Highly-qualified specialists (HQS) : 러시아에서 연간 2백만 루블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소득 외국인력에게 비자를 제공하는데 이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을 일컬음

○ 절차 및 유의점

- 제2항에 따라 과세면제, 소득공제 또는 그 밖의 세제상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본인이 러시아연방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공식확인서와 해당 외국 조세기관의 확인을 받은 국외소득과 이에 대한 납세에 관한 문서를 러시아연방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함 확인서는 납부세액이나 선납세액 납부 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확인서의 제출을 통하여 납세자는 과세면제, 소득공제 기타 권리를 신청할 수 있음
- 현실 상, 러시아 과세 당국은 공식 확인서 및 문서를 제출함에도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

10 2014년 개정 세법 주요 사항

❑ 2014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세법 제1편, 2편이 개정되었는 바, 간략히 개정된 내용을 표로 정리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소수점 아래의 세금은 반올림하여 계산함 (세법 52조)	명문화된 규정 없음	세법 52조 6항에 내용 명문화
명백한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을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 (세법 120조)	법인만 처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최소 10000루블의 벌금을 부과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세무서의 크로스체크로 인해 정보의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을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세법 120조)	법인에만 벌금 부과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10000루블의 벌금을 부과
법인에 폐쇄된 은행계좌가 단 하나라도 존재할 경우, 거래 은행 및 타 은행에서 신규 계좌개설이 불가능함(세법 76조 12항)	거래 은행에 한해 계좌 폐쇄된 경우에도 신규 계좌개설 가능	거래 은행 및 타 은행에서도 법인에 폐쇄된 계좌가 존재할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
서면조사에 관한 규정 구체화(세법 88조)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음	법인이 세액의 감소, 손실 증가를 위해 정정 신고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금 계산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 납세자에 대해서도 벌금 부과(세법 119조)	비 납세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	비 납세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세무서의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상급기관을 거쳐 법원에 제소를 해야함(세법 138조 2항)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만 상급기관 이의제기 가능하였고 세무조사 외에는 즉시 법원 제소가능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 일련의 조치, 결정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에 이의제기가 가능함. 개정법률은 상급 기관에 이의제기 후에 법원에 제소하도록 규정
고가의 차량에 대한 세액이 증가함(세법 362조 2항)	고가의 차량에 대한 초과계수 규정 부재	자동차의 평균가가 3백만루블 이상이면, 세금은 초과계수를 적용하여 지불됨. 2014년 3월 1일 전에 상공부는 대상 차량을 공시할 예정

11 러시아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기타 법령 정보

가. 가산세 규정

❑ 모든 세목이 동일하고 미신고·과소신고·미납부 가산세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적용되고 있음

① 지연신고 → 지연 기간에 따라 과소납부세액의 5 ~ 30% 납부
② 한 과세기간 내 중대한 수익·비용 회계기준 위반 → 10,000 RUB
③ 한 과세기간 내 세무상 과소신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
→ 과소납부세액의 20%, 최소 40,000RUB
④ 미납부 또는 부분적 납부 → 과소납부세액의 20%
⑤ 고의적 미납부 또는 부분적 납부 → 과소납부세액의 40%
⑥ 한 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중대한 회계기준의 위반 30,000RUB

○ 업무상 **고의·과실에 의한 탈세는 형사고발**되며 회사가 오류를 자체 발견하여 세무조사전 수정신고하고 과소납부세액과 관련 가산세를 납부한다면 추가적 납세의무는 면제됨

❑ 세무신고를 위한 회계감사 강제성 여부

○ 내국법인은 재무제표를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연간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단, 외국법인의 지점은 세무목적상으로만 보고하면 됨

○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는 선택사항이며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는 다음의 경우 의무사항임
-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회사, 금융기관, 신용조회소, 보험사, 상호보험사
- 전기 매출액이 4억 RUB 또는 전기말 총자산 6천만 RUB 초과 회사

나. 지점 설립 절차

2012년에 발간된 러시아 진출기업 안내책자에는 **현지법인과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음

○ **(설립단계)** 연방국가등록청, 세무서, 통계청, 연기금 및 사회보장기금, 은행계좌개설의 **5단계를 거쳐서 설립**

- 대표사무소와 달리 지점은 허가증이 필요없고 연방국가등록청으로부터 등록증만 받으면 됨
- 연방국가등록청에서는 지점을 **1년, 3년, 5년의 기간 중 선택**하여 등록하게 하며 많은 기업이 3년을 선택하고 있음
- **3년 기간으로 등록시** 연방국가등록청은 등록세 명목으로 **16만 5,000 RUB을 받게 되며**, 등록서류 제출 후 18일이 지나면 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여기에 **1만 5,000RUB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서류검토기간은 **7일로 단축**될 수 있음

○ 연방국가등록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받게 되면 연방국가등록청에 인감 등록을 하고, 이후 세무서 등록, 통계청 등록, 연기금 및 사회보장기금 시고 및 은행계좌개설 절차를 밟으면 됨

○ 지점의 법적 형태는 대표사무소와 법인의 중간적 형태로 인해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외국법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형태**이나 **설립빈도**는 다른 형태에 비해 **낮은 편임**

- **설립 빈도가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설립기간 제한이 법인과 달리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② 지점의 외국인 주재원은 주재원증과 노동허가 모두 취득해야 함
  ③ 러시아 내 법인과 거래시 거래 건당 5천달러 초과시 은행에 외환 패스포트를 개설하여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등

다. 현지 진출 기업의 배당금 지급

❑ 배당의 기본적인 절차

○ 러시아법에 따르면, 배당은 한국법인 “ZZ” (즉, 러시아 법인 “XX”의 주주)의 배당 결정에 따라 XX가 ZZ에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러시아 상법상 이러한 결정은 기말 이후 2개월 후 및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즉, 12월말을 기준으로 익년 3월 1일 이후 및 4월 30일 이내에 해당 배당 결정을 해야 되며 동 결정은 러시아 또는 한국에 있는 ZZ의 서명권자에 의해 서명 날인되어야 한다.
- 한국에서 서명되는 경우 한국에서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Apostille)가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은 국문 또는 러시아어 병기로 작성이 가능하다.
- 만약 국문으로 작성한다면, 러시아어로 번역해야 하며 이러한 번역본은 러시아 내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을 재확인 해야 하고, 배당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통화로도 가능하다.
- 동시에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XX는 “OKUD form No. 0406009” 이라는 정식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지급명령서인 Payment order에는 payment code인 “50 090 for profit distribution”을 명시해야 한다.
- 해당은행은 배당금 송금을 위해 추가로 회사의 배당 결정문과 같은 공식 회사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추가적인 문서는 은행과 재확인 필수)

❑ 배당 가능 이익 산출

○ 일반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서 지급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전기 이월 잉여금까지도 산정할 수 있으나 한가지 제약 사항은 배당 결정 시점 및 배당금 실제 지급 시점까지 회사는 배당금 지급 이후에도 재무제표상 순자산이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배당금 지급 이후의 재무제표상 순자산 수준에 대한 이러한 제약 조건을 감안하여 배당가능 이익 산출이 필요하다.

- 참고로, 배당 가능 산출을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러시아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기준이 된다.

❑ 배당시 원천세율

○ 일반적으로 러시아 세법상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은 15%이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이중 과세 방지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배당원천세액은 감면된 5% 적용이 가능하다.

- 다만, 5% 감면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의 본사(배당금 수령자)가 대한민국의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배당금 지급전에 구비해야 한다.
- 또한, 한국 - 러시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르면, 5% 감면세율의 적용을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최소 100,000 달러 및 30% 이상 지분 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 세율은 10%가 적용된다.

라. 러시아 진출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시 유의사항

❑ 부동산 매수인의 자격

○ 부동산 매수인은 러시아 내 거주하는 자에 한 한다. 즉, 러시아에 거주하는 자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 외국인으로서 러시아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거주등록증이 있거나 거주허가증 또는 비자 또는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체류)의 유형에는 임시체류, 임시거주, 영구거주(거주등록 상태)가 있으며,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러시아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이 가능
- 다만, 법적 지위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가능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을 연장하여 투자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 기간이 만료한 경우 외국인은 더 이상 러시아에 체류할 수 없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외국인에게 그대로 귀속된다.

임시체류 (Време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 러시아 비자만 있고 정부당국으로부터 거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거주등록증이 없는 상태) ▪ 여행비자 또는 상용비자를 받은 경우 비자 기간만큼만 체류할 수 있음
임시거주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 정부로부터 거주허가를 받아 비자기간과 상관없이 3년간 거주할 수 있는 상태, 발급할 수 있는 쿼터 제한이 있어 신청을 받아 발급 ▪ 그 외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외국인이거나, 러시아인과 결혼하여 거주지가 러시아 내에 있거나, 러시아 내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 쿼터 없이 발급 가능
영구거주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е)	▪ 외국인이지만 러시아 내에서 영구 거주가 가능한 상태(거주등록증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을 보유한 상태) ▪ 5년 기간으로 거주등록증을 발급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음. 영주권을 받은 경우

❑ 부동산 매수 목적물의 제한사항

○ 국가안보를 위해 토지 매수를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외국법인 그리고 무국적자는 국경선 위치한 토지나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러시아대차특별법에 의해 무상(무주물)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외국인은 유상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 지방자치체의 소유 또는 주에 속한 국가 소유의 토지도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다.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제한된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임차권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 농지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 단, 임차권의 취득에 대해서도 러시아 도시 국경선에 위치한 농지는 제외한다.
- 특별 지정 영토 내의 토지도 취득할 수 없다. 예컨대 산림지나 대륙붕 및 해저 토지는 취득 불가하다.

❑ 부동산 매수 목적물의 제한사항

○ 개인 신분증(여권 기타 유사 신분증)과 비자 필요하다. 원본이 아닌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인 인증소에서 공증한 서명 있는 사본이어도 무관하다.

○ 결혼한 외국인이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남편 또는 아내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한다.

○ 상기 언급한 서류들 외에 다른 공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앞에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러시아 법률에 따라 중개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매도인의 주의 및 의무사항

-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이전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함.
- 매매물에 대한 등기부를 제출해야 함. 예를 들어 매매물이 아파트일 경우, 매도인이 이 아파트에 대해 등록해둔 등기부와 기술과학부에 의해 발급된 설계도면과 지번이 제출되어야 함

○ 외국인 매수인의 주의 및 의무사항

- 외국인인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첨부된 서류들을 잘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제시된 매도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함
-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토지사용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아닌지 확인해야 함
-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 등록증을 확인하여 매매 목적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하는 것임
- 매수인은 아파트나 집을 중개하는 부동산거래소나 유사기관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함
- 거래 목적물이 토지라면 지역 관리청을 방문하여 토지의 상태를 알아보고, 매도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 계약 체결 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함. 매매대금의 지불은 보통 은행을 통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 매매대금은 루블로 지급함이 원칙임. 당사자의 합의로 특정 통화로 지급할 수 있음
- 계약에 따른 비용, 예컨대 공증,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관습에 따라 매수인 측에서 부담

❑ 국가등록 절차

○ 러시아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소유권에 대해 등록청(또는 등기소. 이하 '등록청')에 가서 국가등록을 해야 하며, 그 절차는 2007년 5월 16일 연방 등록청에 의해 승인된 절차법을 따른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약정)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부동산 소유권은 지역 등록청에 등록한 후에 법률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 국가 등록청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게 됨.

- 국가 등록청(регистрирующий орган)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음.

> * 주소 : 125373, г. Москва, Походный пр. владение 3, корп. 1,
> * 전화번호 : 8 (495) 955-38-88,
> * 홈페이지 : http : //www.r77.nalog.ru/gosr/ri/rt/3763254/

- 등록청에 권리관계를 등록할 때에는, 거래 당사자(매도인인 러시아인과 매수인인 외국인)들의 공동 신청으로 한다.
-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체류)의 유형에는 임시체류, 임시거주, 영구거주(거주등록 상태)가 있으며,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소유권 등기 시에 국가 등록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구 분	제출서류 (법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제출서류)
임시체류	비자
임시거주	임시거주(허가)증 또는 초청장
영구거주	거주등록증

- 외국인 매수인의 공통 제출 서류 : 신분증,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토지 및 건물 대장과 지적도, 토지 제한 구역이 아님을 밝히는 증명서, 토지 시가 증명서), 공증서, 배우자의 동의서

○ 외국인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는 여권 기타 유사 증명서가 될 수 있다.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사본과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에 부동산 소유권을 등록하려는 외국인을 보증하기 위해서 비자, 거주등록증(또는 임시 거주증 또는 초청장)이 필요하다. 만약 임시체류 및 거주 외국인이라면, 거주기간을 러시아 연방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 서류에 수정된 흔적, 얼룩, 연필로 기록된 부분,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할 수 없다. 만약 제출될 문서가 한 장 이상이면, 순서를 기입하고 규정된 절차대로 동봉되어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자국에서 법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다른 신분증에 대해서는 공인이 필요 없지만, 그 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원본과 러시아어 전문 번역가의 서명이 포함된 공증받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 법인이 매수인인 매수인인 경우 제출 서류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 자본금, 법인 정관 및 설 립등기부, 법인 대표자가 대표자가 제출한 법적 서류들 서류들 (세금납부 세금납부 세금납부 증명서, 국가등록증 국가등록증 국가등록증 등)이다.

○ 부동산거래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지역등록청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매도인으로부터 받음으로써 종료된다.

- 그러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러시아 내 외국인 지위와 관련한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 예컨대 시민권의 취득, 거주허가, 비자, 취업허가, 체류기간 연장, 투자 및 사업 활동, 세금납부에 대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해 금리에 따라 국세청(налоговый орган)이 부과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Ⅲ

외국인 투자환경

1. 러시아 주요 산업 동향
2. 한 - 러 조세조약

1 러시아 주요 산업 동향[7)]

❑ 석유 및 가스 산업

1) 석유 산업

○ 러시아 에너지부에따르면, 2012년도 러시아의 원유생산량은 518백만톤으로 2011년대비 약1.3% 증가하였다. 이는 일산(日産) 10.36백만배럴 규모로 전년도 대비 약1.3%가 증가한 수치이며 2011년 1.23% 증가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수치는 1987년 일산 11.48백만 배럴을 생산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된다.

○ 석유회사별 원유생산량은 로스네프트사가 2011년 대비 2.5%가 증가한 117백만톤을 생산하여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가즈프로넴네프튼 4.4%가 증가한 31백만톤을 생산하여 최대증가폭을 기록하였다.

러시아 주요 석유 회사별 생산량은 아래와 같다.

<주요 회사별 석유 생산량 - 2013년>

회 사 명	생산량(백만톤)	전년대비 증가율
로스네프트	203.03	0.4%
루 코 일	86.92	1.4%
Surgutneftegaz	61.45	0.07%
가즈프롱네프트	49.31	-0.5%
타트네프트	26.42	0.4%
바쉬네프트	16.07	4.0%
루스네프트	8.82	-0.2%

자료 : 러시아 연방 통계청(2014. 1월)

7) 출처 : 코트라(Kotra) 국가정보자료

국세청 www.nts.go.kr

○ 총원유 생산량 중 약 51%인 266백만톤이 러시아내 정유공장으로 공급되었고(3.5% 증가), 약 242백만톤의 원유가 해외로 수출(약 2% 감소)되었다.

○ 한편, 러시아정부는 북극해 유전들의 원유생산이 본격화되는 2020년까지 러시아 원유생산량이 연간 505~510백톤 수준까지 지속적으로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래표는 2011년 기준 주요산유국의 확인 원유 매장량이다.

<주유 산유국의 확인매장량>

지역	국 가	2011	2012		
		확인매장량 (십억 배럴)	확인매장량 (십억 배럴)	비 중 (%)	R/P 비율*
CIS	러 시 아	87.1	87.2	5.2	22.4
	카 자 흐 스 탄	30.0	30.0	1.8	47.4
	아 제 르 바 이 잔	7.0	7.0	0.4	21.9
중동	이 란	154.6	157.0	9.4	n/a
	쿠 웨 이 트	101.5	101.5	6.1	88.7
	사우디아라비아	264.5	265.9	15.9	63.0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년 6월

2) 가스산업

○ 러시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43.3조 입방미터로 전세계 1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 수출의 대부분은 유럽행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은 전체수출에서 약 60% 가량을 차지한다. 러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산지는 서시베리아지역으로 총 생산량의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서시베리아지역 가스전의 매장량이 곧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가스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 2011년 러시아의 천연가스 총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2.9%가 증가한 6,690억㎥로, 이 중 가즈프롬 사가 전체 생산량의 76.7%에 달하는 5,132억㎥를

생산했다. 가즈프롬은 현재 파트너쉽으로 Gaz de France, Wintershall, ENI 등 국가별 주요업체들과 20-25년간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러시아 가스생산량은 전년대비 약2.3%가 감소한 655BCM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최대가스 생산업체인가즈프롬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 한편 가스수출량 역시 러시아의 전통적 가스 수출시장인 유럽의수요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3.6% 감소한 185.8BCM을 기록하였으며국내소비 또한 2% 감소한 459.8BCM을 기록하였다.

<2011~2013 러시아 가스 생산량>

(단위 : 백만㎥, %)

구 분	2011	전년대비 증 감 률	2012	전년대비 증 감 률	2013	전년대비 증 감 률
가스생산량	669,000	2.9	653,000	-2.4	668,000	2.3
가스프롬	513,200	0.9	487,000	-5.1	487,400	0.1

자료 :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2014. 2월)

○ 한편, 세계적인 셰일가스 셰일가스 셰일가스 개발 붐은 러시아 러시아 가스 산업에는 산업에는 위험으로 위험으로 다가서고 다가서고 있다. 기술 개발로 인해 최근 셰일가스 생산비용이 생산비용이 70-90달러/1,000㎥으로 낮춰지면서 러시아의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원가인 40 달러보다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주요 수입국인 유럽국가들도 향후 5-10 년내 미국에 이어 셰일가스 개발을 계획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러시아산 가스 가격의 하락과 시장에서의 수요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자동차 산업

1) 시장 동향

2014년 1월 러시아 자동차 판매 동향

○ 2014년 1월 러시아의 신차 판매 대수는 약 15만 2000대로 2013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이는 지원 프로그램 종료 및 연말 특수를 앞두고 반짝 신장세를 기록했던 2013년 12월을 제외하고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진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위기설이 대두되고 루블화가 달러 및 유로화 대비 약세를 보임에 따라 수입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러시아 월별 신차 판매대수 및 증감률(2013년 6월~2014년 1월)>

(단위 : 대, %)

구 분	2013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판매량	241,330	234,469	231,915	246,895	234,481	231,982	264,257	152,662
증감률	-11	-8	-10	-5	-7	-4	4	-6

자료 : 유럽 비즈니스협회

○ 판매량은 완만한 침체 속에서도 닛산, 도요타, 혼다 등 일본 회사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부분 판매량이 2013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한데 반해 Nissan 24%, Toyota 21%, Mitsubishi 25%, Honda 60% 등 일본 회사들은 모두 두 자릿 수의 증가세를 실현했다. 특히, 2013년 전체 순위 8위를 기록했던 닛산의 판매량이 2013년 동기 대비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대를 제치고 월별 순위 4위를 차지한 점이 인상적이다.

<회사별 러시아 신차 판매 대수 및 증감률(2014년 1월)>

(단위 : 대, %)

순위	회 사 명	2014년 1월	2013년 1월	증 감 률
1	Lada	23,647	30,037	-21
2	Renault*	12,894	14,741	-13
3	KIA	11,199	11,059	1
4	Nissan	11,051	8,925	24
5	Hyundai*	11,044	11,306	-2
6	Chevrolet	9,420	9,542	-1
7	VW	8,599	9,968	-14
8	Toyota*	8,319	6,860	21
9	Mitsubishi	5,007	4,020	25
10	Skoda	4,744	4,623	3
11	Opel	4,281	5,211	-18
12	Ford*	4,250	6,364	-33
13	Daewoo	3,718	5,693	-35
14	TA3 상용	3,260	4,108	-21
15	Mazda	2,848	2,071	38
16	Mercedes-Benz	2,710	1,902	42
17	BMW	2,540	2,171	17
18	UAZ*	2,201	2,906	-24
19	Honda	1,929	1,209	60
20	Peugeot*	1,843	2,338	-21
22	Audi	1,623	1,725	-6
23	Suzuki	1,482	1,498	-1
24	SsangYong	1,330	1,853	-28
29	Subaru	938	864	9
32	Lexus	707	778	-9
33	Infiniti	471	625	-25
36	Volvo	402	337	19
-	Total	152,662	162,077	-6

자료원 : 유럽 비즈니스협회

○ 점유율의 경우 2013년 동기 대비 기존 강세 브랜드들은 하락했으나 국산 브랜드는 소폭 상승했다.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AVTOVAZ, RENAULT 등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0%, 0.7% 하락했다. 그러나 국산차의 경우 KIA가 7.3%로 2013년 동기 대비 0.5% 상승했으며, HYUNDAI는 뒤를 이어 7.2%로 같은 기간에 0.2% 상승하였다. 시장 점유율 역시 일본 회사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국산차와의 경쟁구도는 계속되고 있다.

<회사별 러시아 신차시장 점유율>

(단위 : %)

연번	브랜드명	시장점유율		
		2014년 1월	2013년 1월	증 감 률
1	AVTOVAZ	15.5	18.5	-3.0
2	RENAULT	8.4	9.1	-0.7
3	VW Group	10.5	10.6	-0.1
4	NISSAN	7.2	5.5	1.7
5	GM Group	9.0	9.2	-0.2
6	KIA	7.3	6.8	0.5
7	HYUNDAI	7.2	7.0	0.2
8	TOYOTA Group	5.9	4.7	1.2
9	MITSUBISHI	3.3	2.5	0.8
10	FORD	2.8	3.9	-1.1
11	DAEWOO	2.4	3.5	-1.1
12	MERCEDES-BENZ	2.0	1.3	0.7
13	MAZDA	1.9	1.3	0.6
14	BMW Group	1.7	1.4	0.3
15	UAZ	1.4	1.8	-0.4
16	HONDA	1.3	0.7	0.6
17	SUZUKI	1.0	0.9	0.1
18	SSANGYONG	0.9	1.1	-0.2

자료 : 유럽 비즈니스협회, 맨 좌측 '연번'열은 순위와 상관 없음.

○ 모델별 러시아 신차 판매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과 비교해 전체적인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SUV 차량의 강세 지속되고 있다. Lada의 Granta와 Hyundai의 Solaris 판매가 2013년 동기 대비 각각 22%, 6% 감소한 가운데에서도 모델별 전체 순위에서는 1위와 2위를 지켰으며, 다른 차종도 큰 변동이 없다. 그러나, 르노의 Duster는 2013년11월 이후 꾸준한 판매량 증가를 보이면서 KIA New Rio의 판매호조(12% 증가)에도 불구하고 3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차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SUV로, 선호도가 점차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요 모델로는 르노의 Duster, Lada의 Largus, 닛산의 New X-Trail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2014년 러시아 자동차시장 전망

○ 하락 추세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매력적인 자동차시장이다. 유럽비즈니스협회가 예상한 러시아의 2014년 신차 판매 규모는 2013년 대비 1.6% 감소한 273만 대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13년 기준 독일(295만 대)에 이은 유럽 자동차 판매규모 2위로, 영국(226만 대) 및 프랑스(171만 대)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력적인 시장 지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반적인 시장 하락세 속에서 일본 브랜드의 약진, 루블화 약세 등 수입 및 소비시장 악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연초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들의 통화 약세 현상이 벌어지면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러시아의 소비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러시아 신차시장 및 자동차 관련 시장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환율, 시장 동향, 정부 정책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일본 완성차브랜드들이 작년 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옴에 따라 시장점유율 규모가 비슷한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경쟁자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www.nts.go.kr

○ 정부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시 필요,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 기대감은 여전하다. 자동차시장이 2013년부터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2013년까지 시행됐던 자동차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2014년까지로 연장된 상황(현지 언론 2014년 1월 보도)이다.

○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1분기의 자동차 판매 동향에 따라 현재의 이자지원 이외의 새로운 부양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고,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소치 올림픽(2014) 및 월드컵(2018)과 같은 대형국제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자동차 관련 마케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더 활발한 마케팅이 요구된다.

3) 트럭산업

○ 2011년 총 중대형 트럭 판매는 2011년 11만 2천대가 팔려 2010년 8만 1천대에 비해 약 40% 성장하였다. 보스턴 컨설팅사는 2020년까지 러시아의 중대형 트럭 판매량이 연간 250,000대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1~2년이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싶어하는 외국 브랜드 트럭생산 업체들에게 성공적인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 이에 부흥하듯 Volvo는 2009년 트럭 조립공장을 칼루가에, Scania는 2010년에 상트 뻬쩨르부르그에, Mercedes Benz와 Kamaz는 2010년에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MAN이 상트 뻬쩨르부르그에 공장을 개소할 예정이다.

○ 참고로 2011년 러시아의 총 트럭 수는 340만대로 추산되며 90% 가량이 러시아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Volvo가 1.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MAN이 1.3%, Mercedes Benz와 Skania가 1%대를 차지하고 있다.

○ 2012년의 트럭 판매는 총 35.7만대로 전년대비 약 8.8%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경기 침체 및 저성장의 영향으로 약 30%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트렉 생산은 주요 기업들의 생산설비 증설로 약 1.5% 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타이어

○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로 판매량이 급감했던 러시아 타이어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라시이스까야 가제타에 따르면 2008년 약 5,000만 개의 판매량을 기록한 타이어 시장이 2009년 3,200만 개로 대폭 하락했으나 2010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1년에는 2008년의 5,000만개 수준으로 판매되었다.

○ 유럽시장과 러시아의 타이어 시장은 2012년에도 성장, 약 6,100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된다. 러시아 생산을 기준으로는 승용차용 타이어가 0.2%,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가 3%, 가 증가하였다.

○ 2012년의 러시아 타이어 생산은 승용차용이 6.2% 증가한데 반해 버스와 트럭용은 11.6%가 감소하였다. 이는 2013년 러시아의 트럭 시장 위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현지 전문가들은 차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2012년에는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2010년에는 새 타이어와 중고(재생) 타이어를 모두 포함해 약 2600만 개(12억 달러치)가 수입됐는데, 이는 2009년 1640만 개(8억4000만 달러치)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주로 일본, 한국, 중국에서, 중고 타이어는 독일, 인도,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러시아 타이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업체간의 합동 연합 및 외국업체의 현지 진출 역시 활발한 상태이다.

❑ 유통 산업

○ 2009년의 세계경제위기 침체이후 2010년부터 러경제의 지속성장영향으로 소매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으며 2011년에7.0%의 증가율 기록에 이어 2012년 6.3 %, 2013 3.9% 증가하였고, 소매거래량은 2011년 기준 6,490억 달러에, 2012년 기준 6,880억 달러, 2013년 7,430억 달러에 달하였다.

국세청 www.nts.go.kr

○ 재래시장을 포함해 전체 소매거래량은 2011년 1-9월 기준 4,547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대형 유통업체가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은 현대적인 대형유통업체가 소매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반면 재래시장의 비중은 점차 감소 중에 있다.

<소매거래량(유통망별 거래비중)>

(단위 : 10 억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09	2011.09
총 거래량	234.7	290.4	362.3	464.17	486.17	548.97	392.1	454.7
시 장	21.2%	19.6%	15.2%	13.1%	13.3%	12.5%	12.4%	11.5%
대형유통점	78.8%	80.4%	84.8%	86.9%	86.7%	87.5%	87.6%	88.5%

○ 유통업체들은 모스크바, 상트페쩨르부르크 등 러시아 주요도시에서 지방의 대도시로, 서북부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쩨르부르크소재)에서 중부, 시베리아, 극동지역으로 점포망을 확대하고 있다.

○ 대형유통업체는 다시 Auchan, Metro, IKEA 등 외국계업체와 X5 그룹, Magnit사 등 러시아 대형유통업체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외국계업체는 대형점포 위주, 러시아유통업체는 중소형점포 위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참고로 가전제품 유통시장은 M.Video, Eldorado 등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석유화학산업

○ 석유산업의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석유화학산업은 생산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여타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이 약한 실정이다. 이에 러시아정부는 2012.3월, “2030 가스・석유화학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다. 동 계획안의 입안 배경은 최근 3년간 평균GDP(4%)보다 높았던 플라스틱제품 수요(특히폴리머)와 산업원료인 나프타, 액화탄화수소가스의 공급과잉

대비, 기존 석유화학 생산시설은 부족하다는 인식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원료를 활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 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 기준 240만톤의 에틸렌 생산량을 2030년까지 1,420만톤으로 확대하고 나프타, 액화탄화수소가스 등 산업원료를 점진적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비중을 확대하고 5년 내에 에탄과 같은 러시아 내 많이 생산되는 원료의 사용비중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6개 지역에 석유화학클러스터단지 조성해 연료수송관 정비 및 산학협력체재를 정비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클러스터단지 조성에 힘입어 러시아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폴리에틸렌제품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합성고무, 합성섬유의 생산도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도의 플라스틱 생산은 전년 대비 1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 석유화학클러스터 6개지역
> - 볼가(Волжкий), 서시베리아지역(Западно-Сибирский), 카스피해(Каспий ский), 동시베리아지역(Всоточно-Сибирский), 극동지역(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북서지역(Северо-Западный)
> - 이중 극동지역, 북서지역은 2017년이후, 나머지지역은 2017년 이전까지 클러스터조성

❑ 의료기기

○ 2013년 러시아 의료기기와 기타 소모품 시장은 6.2 billion 달러 규모로 (meaning a 14.8-percent yearly rise) 세계 20대 시장 중 하나로 현재 시장의 73%는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의료기기 업체는 대체로 낮은 자본의 소규모 구조로 구식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어 가격 외에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www.nts.go.kr/kor

○ 이 때문에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외국산간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특히 보증된 품질을 갖추었다는 이미지를 통해 유럽 업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좋은 운송 여건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 제품도 최근 들어 호평을 받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러시아 법에 따라 모든 의료제품들은 러시아에 수입되기 전 보건부에 등록돼 GOST-R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들은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턴키 프로젝트 (turn-key project, 일괄 수주방식)와 다양한 상품 범위를 갖춘 외국 회사를 선호하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 보안기기 보안기기 보안기기 보안기기

○ 러시아 CCTV 시장은 2009년 경제 위기 당시에 약간 주춤했으나 2010년에 다시금 성장하며 시장 규모 1억73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러시아 정부의 테러 경계 추세와 일반 국민의 보안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11~2013년 동안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보안기기 시장은 2012년에는 2억 달러, 2013년에는 2.2억 달러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 보안과 안전기기 중에서도 주로 CCTV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CCTV 시장의 75%를 외국 업체가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과 함께 저가형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 차후에는 IP 비디오 감시장비 시장을 중심으로 보안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역시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휴대폰

○ 2012년도 러시아 내에서 휴대전화는 4,200만대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14% 증가한 약 1,990억 루블(약 66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피처폰 약 2,902만 대, 스마트폰 약 1,200만의 규모로 이 중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7.3%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하였다.

○ 한편 노키아는 전년 대비 14.8%가 감소해 2위를 차지하였으며 영국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Fly 사는 사상 첫 시장점유율 3위에 등극하였다. 한편, LG는 FLY에 3위 자리를 내주어 4위에 머물렀지만 스마트폰 시장에 주력하면서 평균 판매가는 67% 상승하였다.

○ 2013년에는 약 4,160만대의 휴대폰이 판매되며,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년에 비해서는 약 1% 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가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금액 기준으로는 약 10% 성장한 2,250억 루블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다.

❑ 사무용품

○ 러시아 사무용품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35억 달러로 집계되며 2013년까지 연간 20%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현 러시아 문구류 시장상황은 3중파이에 비유할 수 있다. 가장 밑바닥층은 품질이 낮은 저가제품이 위치하고 전체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층은 약 60%를 점하고 있다. 중국, 대만, 일부 러시아 및 유럽제품이 이 부류에 속한다. 상위층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이커브랜드' 제품이 이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품질 좋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사무용품의 공급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 보일러

○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건물은 중앙공급식 난방이지만 점차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별난방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 최대난방 제품 배급자에 의해 유통 중인 우리나라의 모기업의 보일러 제품이 판매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 2004년에 100만달러를 돌파한 이래, 러시아 보일러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10년 시장규모는 400만달러를 기록하였고,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경우, 2015년의 시장규모는 600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식품가공기계류

○ 경기회복에 따라 기계, 설비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독일 등 유럽제품을 선호하던 바이어들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제품의 품질과 함께 가격조건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함께 신규 거래선 개척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품질대비 가격조건이 좋은 한국, 대만을 포함해 저가의 중국산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육류수입 의존도가 약 30%대에 달하는 등 러시아는 식품류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정부차원에서 농업분야를 포함해 식품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빵, 육류, 유제품 등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각종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12년의 관련 설비성장률은 약 5.1%, 2013년에는 약 2.3% 가량 성장하였다.

❑ LED 전구

○ LED는 러시아에서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제품으로 기존 백열전등을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LED제품으로 교체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러시아는 정부차원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향후 LED제품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효율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현지 시장조사 업체인 Apelsintez research사에 따르면, 2009년 초러시아의 LED 시장규모는 5,600만달러로 러시아 전체 조명기구 시장의 약 3.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13%씩 성장해 2012년에는 러시아 조명기구 시장의 7%까지 점유율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성장세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LED전구 보급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201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예상되는 시장성장률은 연평균 16～17% 선이다.

2 한 - 러 조세조약

[1995.08.24]
1992. 11. 19 서울에서 서명
1995. 8. 24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양국간 경제.과학.기술 및 문화 협력의 증진을 촉진, 강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 2 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서 부과되는 소득 또는 총소득의 일부분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에 적용된다.

나.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이하 "러시아 조세"라 한다)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제2항에 열거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모든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제 3 조【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연방(러시아)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동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며 동 국가의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영해,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토를 말한다.

다. “러시아연방”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동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며 동국가의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영해,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토를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말한다.

마.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상이한 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행하여지는 때에 한한다.

사.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재무부 또는 그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의 거소판정의 주요기준은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체약국을 결정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각 체약국이 동 개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5 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정거주자의 사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모든 채취 장소를 포함한다.

3. 건축장소.건설.조립 또는 설치공사,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추공 또는 시추선은 관련된 작업기간이 12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그러한 작업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계인이 제출하는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활동이 12월을 초과하나 24월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이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다음 유형의 활동은 타방체약국안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거주자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타인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거주자를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거주자를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거주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단순한 서명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사. 상기 가호 내지 바호의 복합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인은 대리인이 다음 각호의 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이 동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그가 동인의 명의로 동 타방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나. 그가 그 권한을 항상 행사하며,

다. 그가 이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니고,

라. 그의 활동이 제4항에서 언급한 활동에 한정되지 않을 것.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물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 6 조【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률이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3항의 규정은 거주자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거주자가 위와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 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정상적으로 계상된 경비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그의 고정사업장간에 합리적으로 배분이 허용된다. 그러한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기타의 국가에서 발생한사업집행 및 일반행정비용·연구개발비용·경영자문·기술지원등과 관련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4. 전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어떠한 사업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모든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국제운수】

1.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이윤(또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수 이윤(또는 소득)은 컨테이너·기타관련장비의 사용·유지 및 임대로 부터의 이윤(또는 소득)을 포함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운송수단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또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9 조【어떤인이 다른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경우의 소득 조정】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인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양인중 어느 일인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인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최소한 3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을 제외)이고 또한 100,000 미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지 통화금액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러시아연방의 경우 이 용어는 특히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참여자에게 해외 송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서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후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령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

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체약국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후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이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서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동산”이라 함은 그러한 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 법규에 의하여 인가된 자산을 말한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양도 또는 그러한 운영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독립적 전문적 용역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당해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되어졌고
   나. 그 소득이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정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고정시설에 귀속되며
   다.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역년중 총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체재하였을 경우 이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외 사업이윤금액 및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원칙에 따라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여타운송 수단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술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연금】

1. 일방체약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그들에 의해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당해 연금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기타 모든 형태의 과거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정부용역】

1.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정부 그 하부조직 또는 대한민국의 지방당국 및 러시아의 각 공화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나.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3.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0조【교사 · 연구원 · 학생 및 사업견습생】

이 협약의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의 현재 거주자 또는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자국법령에 따라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유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그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타방 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를 면제한다.

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

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러시아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 러시아연방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러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러시아안의 원인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러시아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러시아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 이 협약규정에 따라 당해 거주자에게 러시아에서 부과하는 세액에 대해 공제가 주어진다. 다만, 그 공제액은 러시아의 세법 및 규정에 따라 계산된 당해 소득에 대한 러시아의 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인 개인은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제3국의 거주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중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회사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유사한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조【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 규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5조【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모든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행정심판 또는 소추나 행정심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모든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발효】

1. 이 협약은 각체약국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제28조【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나.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고를 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상 옥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국세청
www.nts.go.kr/kor

Ⅳ

부록

1. 러시아 관세 제도
2. 러시아 투자 관련법

1 러시아 관세 제도[8)]

가. 개요

수입관리제도는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의 비관세조치로 구분된다.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는 가장 중요한 수입관리제도로서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보호와 국가재정수입확충이라는 두가지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2012년 8월 22일부로 러시아가 WTO에 정식가입이 되면서 10%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2017년까지 7.8%로 낮출 예정이다.

통관 시에는 제품에 따라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관세부과기준은 HS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연방 대외경제상품코드에 의거해 산정한다.

또한 러시아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품목을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04년부터 관세절차를 간소하게 바꾸고자, 세관신고 검사기간을 3일로 줄이고 물품에 대한 사전세관신고 후 나중에 해당 물품을 들여올 수 있게 하였고, 이 밖의 등록절차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원은 비공개된 문서목록을 정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선 관세당국의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통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외국수출업체에게 피해는 물론 러시아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8) 출처 : 코트라(www.kotra.or.kr) 국가별 정보 자료

이에 2012.5월 러시아 전략기획청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관세행정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 주요 내용

○ 목표 :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 개선
- ’12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13년에 시법을 거쳐 ’14-’18년까지 정착

2) 구체적인방안 : 통관서류 축소 및 소요기간, 비용 단축

○ 통관서류 축소 : 수입통관 절차시 필요서류를 2012년 10개에서2015년 6개, 2018년 4개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8개에서 2015년 4개로 축소

○ 통관 소요기간 단축 : 수입통관 소요기간을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단축

○ 통관비용 절감 : 수입통관시 소요되는 비용을 2012년 1,800달러(1콘테이너 평균)에서 2015년 1,300백달러, 2018년 1,000달러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1,850달러에서 2015년 1,200달러, 2018년 900달러로 절감

○ 기타 : 통관간소화 적용대상 기업(기관) 확대, 세관원복지개선, 세관규정 위반행정 처벌정비

나. 수입 관세

WTO 가입과 동시에 러시아는 일부 품목에 관세율을 낮추었으나2018년까지 순차적인 관세율 인하로 인해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 중인데 아래와 같이 가전, 건설부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 등이 대상이다.

<관세율 사전 인하 수혜 대표 품목>

품 명	HS Code	2012.1~10월 수출액(증가율)	현 관세율	과세 감축계획			
				가입시	2013	2014	2015
노트북	847130	$39백만(102.7%)	0%	10%	6%	2%	0%
공기 청정기	842139	$ 3백만(137%)	0%	10%	8.3%	6.7%	5%
건설기계 부품	843149	$39백만(8.2%)	0%	5%	4%	3%	
머시닝센터	845710	$ 3백만(18.1%)	0%	8.8%	7.6%	6.3%	5%
의료 기타기기	901380	$27백만(124.6%)	0%	3.3%	1.8%	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	$22백만(41.5%)	0%	5%			

자료 : 러시아 WTO입의정서, KITA, ALTA

다. 소비세(EXCISE TAX)

소비세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 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한 품목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는 에틸알코올 주정, 주정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 등 8가지 상품이 포함된다.

1998년 2월 18일 조치로 2,500cc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폐지됐다. 소비세 산출은 CV(관세가액) * ETR (소비세율) / 100이다. 1998년 2월 18일부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소비세가 10～20% 인상됐다.

라. 종가세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Invoice 금액(C&F 또는 CIF)의 5%, 10%, 15%,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예) 폴리에스터 텍스춰드 원사(5402 33 0000) : 관세율 10%

마. 종량세

통상 ECU 관세라고 지칭되는 관세유형으로 Invoice 금액의 10%, 15%, 20%, 25%, 또는 상품의 양(수량 또는 중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1) 수량세

○ 예) 일회용가스라이터(9613 10 0000) : 관세율 5Euro/1000pcs
○ 예) 벽시계(9105 21 0000) : 관세율 20% (최소 0.7Euro/pcs)
○ 예) 컬러TV - 화면 52~72cm(8528 12 6203) : 관세율 20%
(최소 34Euro/pcs)

2) 중량세

○ 예) 합성섬유제모포(6301 40 1000) : 관세율 20% (최소 0.7Euro/KG)
○ 예) 면제양말(6115 92 0000) : 관세율 15% (최소 2.0Euro/KG)
○ 예) 가죽외투(4203 10 0001) : 관세율 20% (최소 7.0Euro/KG)

바. 종가 및 종량 혼합세

○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신발류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
- 예) 가죽운동화(6403 19 0000) : 관세율 15%, 그리고 1.4Euro/pair

<종가세 및 종량 혼합세>

품 목 명	변경 전	변경 후
알코올제품 (낮은 알코올 함량의 포도주, 음료 제외)	45,000 R/L	50 R/L
포도주, 알콜도수 9%까지 음료(발포성 제외)	2,000 R/L	2.4 R/L
알코올 도수 25%까지 리케르, 포도, 과일, 꿀 음료(발포성, 탄산음료 제외)	3,000 R/L	40 R/L

품 목 명	변경 전	변경 후
발포성 포도주와 삼페인	5,000 R/L	22.5 R/L
비쓰무스와 포도주 (천연포도주, 발포성 삼페인, 탄산류 제외)	-	22.5 R/L
맥주(맥주 종류 불문)	500 R/L 900 R/L(캔맥주)	0.6 R/L
포도주, 바라포성, 탄산 음료	900 R/L	7 R/L
에틸알코올(모든 종류의 원료로 생산된 용액)	12,000 RL	12 R/L
에틸알코올(의료용, 연구, 의약품 제조용)	8,000 R/L	8 R/L
파이프용 담배(GOST* 담배 제외)	100,000 R/L	14 R/KG
파이프용 담배(GOST* 담배)	100,000 R/L	13.5 R/KG
담배(끽연)(원료담배 제외)	50,000 R/KG	60 R/KG
시가(GOST* 담배 제외)	5,000 R/piece	3 R/piece
시가(GOST* 담배)	5,000 R/piece	1 R/piece
소형 엽궐련, 필터 85mm이상 담배	21,000 R/천piece	25 R/천piece
필터담배 (필터 85mm 담배제외, GOST 1,2,3,4 등급 제외)	14,000 R/천piece	17 R/천piece
필터담배(GOST 1,2,3 등급)	10,000 R/천piece	12 R/천piece
담배(GOST 4등급)	7,500 R/천piece	8 R/천piece
필터 없는 담배	5,500 R/천piece	6 R/천piece
GOST 1등급의 마분지 물부리 있는 담배	3,000 R/천piece	4 R/천piece
보석류	판매가격의 30%	판매가의 15%
석유(가스 응축물 포함)	55,000 R/톤	55 R/톤
자동차용 휘발유(옥탄가 '80'까지)	판매가의 25%	290 R/톤
자동차용 휘발유(옥탄가 '80'이상)	판매가의 25%	370 R/톤
승용차**	판매가의 5% (2,500CC이상)	판매가의 10%

주1 : * GOST는 러시아 국가 규격을 의미함.
** 승용차의 경우 종전 물품세는 판매가의 5%였으나 변경 이후 2,500CC 이상의 경우에만 물품세를 10% 부과하기로 했음.

주2 : 상기 단위 중 R은 Ruble이며, L은 Liter임. 변경된 물품세율은 신화폐 루블로 표시돼 있어 종전 1,000루블이 1루블로 표시돼 있음.

자료 : CONSECO, Rossiskaya Gazeta

사. 부가가치세

러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은 18%이며, 식품류 등 일부 품목은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향후 부가세를 1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나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아직까지 재무부와 경제통상개발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 Invoice 금액 강제 Correction 제도

현재 러시아 중앙세관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체의 세관신고 내용이 상세히 저장돼 있으며, H.S.Code와 상품별로 기준상품가를 책정하고, 이에 미달된 상품가를 세관 신고하는 경우 강제로 기준상품가 이상으로 Invoice 금액을 조정해 관세 및 부가세를 징수한다.

자. 러시아 HS Code별 관세율 확인방법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이용사이트 : www.alta.ru

○ 확인방법

- www.alta.ru ⇨ 영문(영국국기) 클릭하면 영문으로 검색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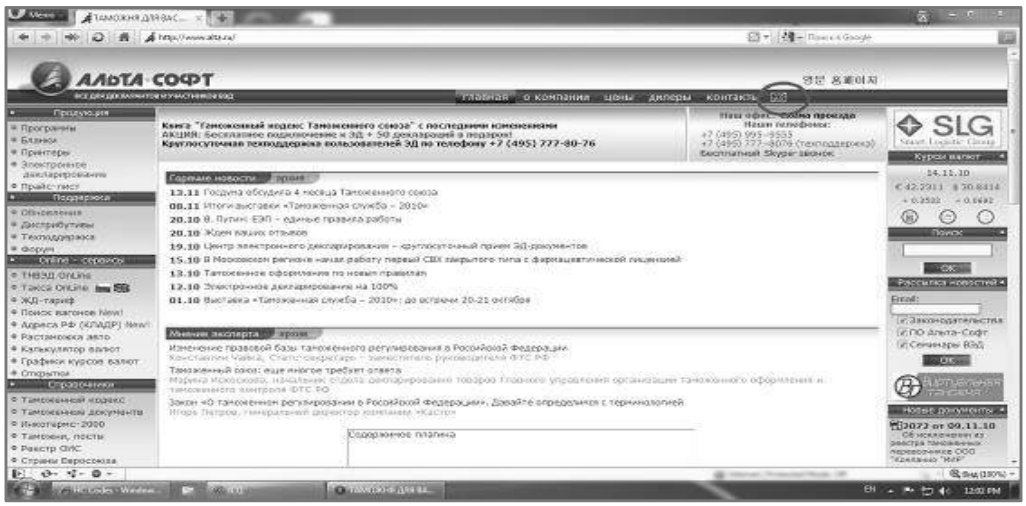

TNVED / Combined Nomenclature 클릭

- Search란에 HS Code(또는 품목명)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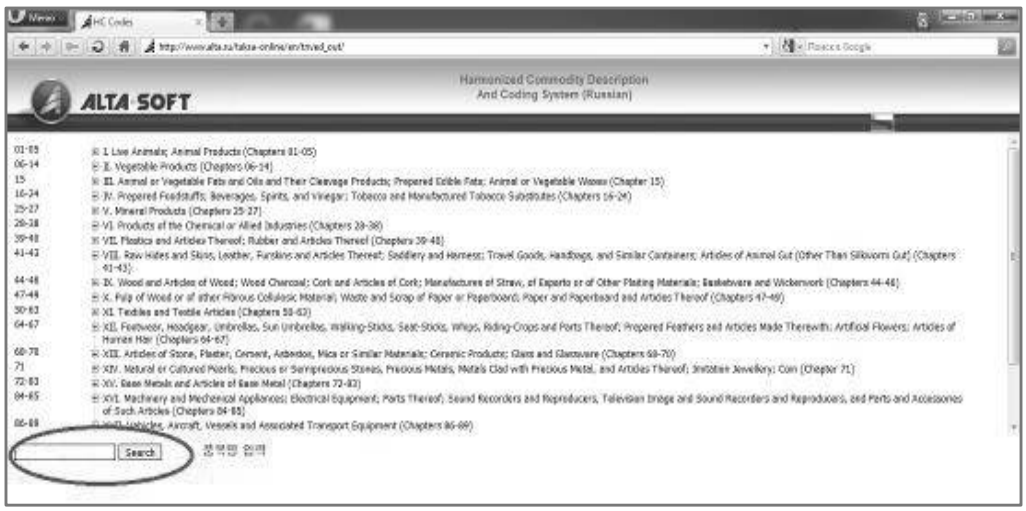

- Search 결과가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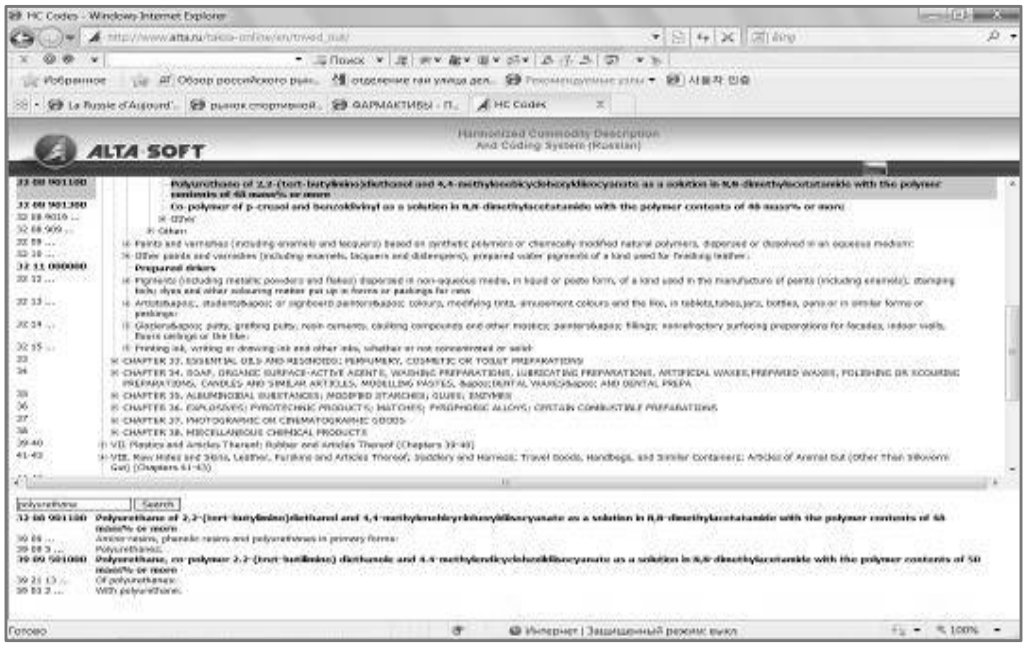

- 해당 설명 클릭(볼틱체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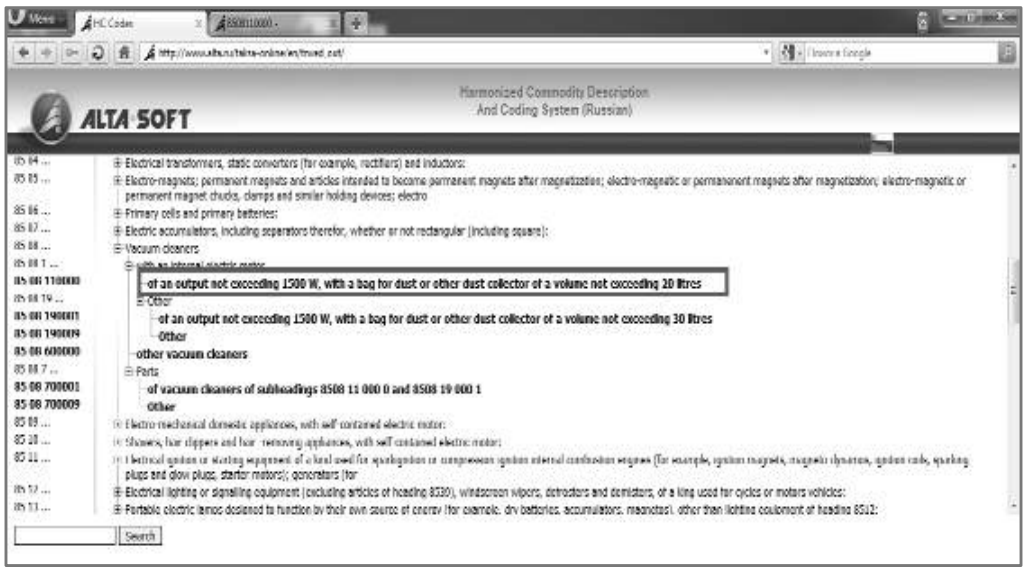

- 클릭하면 팝업(Pop-Up)창이 뜨고 수입관세율, 부가가치세, 간접세 요율이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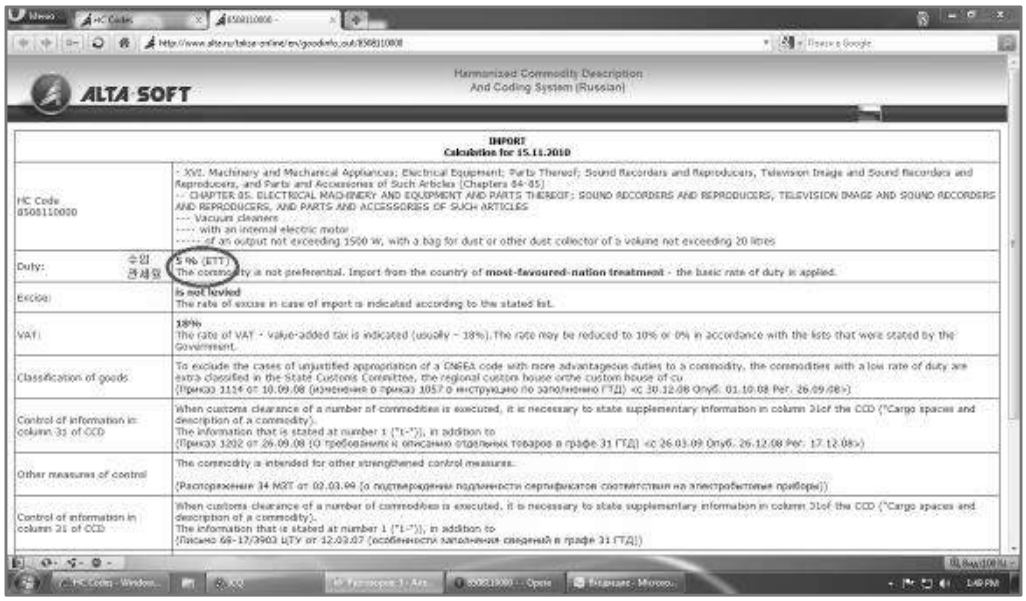

2 러시아 투자 관련법[9)]

가. 개요

러시아 연방내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제160호)은 1999년 7월 9일 대통령에 의해 서명 및 공포된 이후 총 6번의 개정을 거쳤다.

외국인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의 보장, 수용 및 법령개폐로 인한 손해보상, 우선 투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재량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9) 출처 : 코트라(www.kotra.or.kr) 국가별 정보 자료

< 외국인투자법개정법령 >

○ 2002년 3월 1일 : N 31-ФЗ,
○ 2002년 7월 25일 : N 117-ФЗ, от08.12.2003 N 169-ФЗ,
○ 2005년 7월 22일 : N117-ФЗ, от03.06.2006 N 75-ФЗ,
○ 2007년 6월 26일 : N 118-ФЗ, от29.04.2008 N 58-ФЗ,
○ 2011년 7월 19일 : N 248-ФЗ,
○ 2011년 6월 12일 : N 409-ФЗ

그러나 위 외국인투자법은 세부적인 제도 미비와 복잡한 관행으로 현실에서는 원만히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의 현 상황이라 하겠다.

❑ 외국인 투자법 중 보장된 활동

○ 적법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의 대외송금
○ 이윤의 재투자에의 사용
○ 루블화 구좌를 사용해 외환 매입
○ FORCE MAJEUR(불가항력) 이외의 상황 하에서 외국투자자산의 국유화 및 징발금지(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함)

나. 투자우선 프로젝트

러시아는 세금특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우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투자 우선프로젝트/기업은 ①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 사업 ②외국인투자액 합계가 10억루블 이상인 프로젝트 또는 외국인이 1억루블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합작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인센티브로는 러시아에서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총투자규모가 1억달러 이상이며 그 중 외국인투자가 1,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

기업은 최대 5년까지 수입관세 50%가 감면된다. 기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조세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다만, 우대여부는 경제개발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우선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는 없다. 투자우선프로젝트/기업의 보상기간은 순이익 누계와 총지출간의 차이가 흑자를 기록했을 때까지이며 기간은 7년 이내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업종은 외국투자보호법에는 명기돼 있지 않다. 다만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지방정부에 우대세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다. 각종 우대조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조설비투자의 경우 기업이윤세나 지방세에 대한 우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각 우대조치에는 법인세 감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설비기계 등 자본재수입에 관한 우대조치가 포함된다.

각 지방정부에서 규모가 큰 제조투자의 경우, 지방세를 우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정부와 교섭하는 편이 좋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그들 우대세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적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교섭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28일부 모스크바주의 주법「모스크바주의 세제우대에 대해서」에서는 자본금 3만달러 이상의 회사가 100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공장의 신규 설비에 투자할 경우나 기존 공장의 설비 갱신을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당초 3년간 법인세 중에서 지방정부에 납세할 부분의 면제, 재산세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지방정부와 개별로 우대세제의 내용을 교섭하고 조인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등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기업이윤세(지방세) 경감 등의 세제우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2009년 1월 1일, 법인세가 24%에서 20%로 인하되어 구주 각 국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 됐다. 또한 러시아정부는

2005년부터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을 조성해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세금감면, 행정처리 간소화 등의 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동 지역에서의 생산이 물류, 유통측면에 이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정부와 투자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라. 투자우대제도

1억루블 이상 투자시에만 투자허가 의무화이며, 이익금을 적립 기금조성용 이전시 비과세한다.(단, 이전비율은 전 이익금의 50% 초과 불가, 적립금 규모는 납입자본금의 25% 불가) 100% 외국기업은 종업원 임금의 자유결정이 가능하며, 생산능력의 증강, 보수, 복구 등에 사용되는 이익금은 비과세(단, 석유 및 석탄 생산, 의료기기 생산, 의약품 생산, 식품 및 소비재 생산 기업에 한함)이다.

합작기업이 투자액의 30% 범위 내에서 이익금을 환경보호 및 복구사업비로 집행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으며, 자유경제지구(FEZ)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등록절차의 단순화(투자규모가 7,500만루블 미만인 경우 즉각 등록), 낮은 세율 혜택(송금세, 토지 및 천연자원 이용세, 수출입 관세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국경통과절차 및 출입국시) 등의 우대조치를 받는다.

재투자에 사용할 경우 이윤세를 면제(이윤의 50%까지 허용) 받으며, 1억달러 이상 투자시 자사제품의 대러시아 수입시 관세를 5년간 1/2 감면 받는다.

러시아 정부는 중기프로그램으로 비원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중・고급 가공상업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재 산업부문에서 가공 산업부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자재 산업부문과 가공 산업부문의 재정(조세)부담의 재분배를 추진하고 있다.

마. 투자지역 우대조치

종합세법 제2부 제25장(2002.1.1 발효)은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 정부가 부여하던 조세감면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정한 우대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

종합세법 제2부 도입 이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브고로드, 레닌그라드주 등 일부 지역은 조세감면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발틱해 연안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동북부의 마가단(Magadan)에 자유경제지역(free economic zone)은 설치되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2004년 1월 1일부로 두 자유 경제지역 외에 투자자에게 특정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은 모두 철폐되었으며, 칼리닌그라드와 마가단 지역의 우대조치도 매우 제한적이다.

바. 수출우대 조치

특별한 수출우대 조치는 없다.

사. 외국인 참여 제한분야

모든 기업 지분의 인수는 연방금융시장국에 등록돼야 하며, 20%를 초과하는 지분 취득은 연방반독점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 지분참여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7장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 및 합병, 지분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정부는 법령, 포고령에 의하거나 또는 지배주주의 자격으로, 가스, 전력 등 전략적 분야와 민감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 천연가스

Gazprom 지분통합에 관한 대통령령 제1020호(1999.8.19)는 Gazprom(천연가스산업독점 국영기업)과 그 자회사 지분의 외국인 보유한도를 20%로 제한하는 한편, 정부의 최소 보유지분은 종전 30%에서 38%로 높였다. 또한 동 포고령에 따라 비거주자 조직은 미국증시예탁증서(American depositary receipts : ADRs)만을 구입할 수 있고, 국내 주식취득은 금지돼 있다.

○ 전력

1998년 제정된 국영전력회사인 통합전력시스템(Unified Energy System : UES) 및 다른 국영에너지회사의 지분 처분 규정에 관한 연방법(제74-FZ호)은 UES의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는 25%로 제한하며, 국가는 51%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동 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 외국인의 UES 지분 보유 규모는 3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UES의 발전, 송전, 배전분야를 분할하고 시장자유화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력분야 구조조정은 여러 차례의 지연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 민간항공

1998년 항공산업발전법에 기초한 민간항공법은 외국인의 지분 보유 한도를 민항기 제조사의 경우 25%, 민간항공사의 경우 49%로 제한했으며, 합작기업의 대표는 러시아인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이사회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경제개발통상부는 민항기 제조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늘리는 법규 개정을 추진했다.

실무적으로는 민항기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립되는 민항기 제조사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외국기업은 자신이 25% 이상의 지분을 갖는 별도의 국내법인을 설립하며, 이 국내기업을 구매대행사로 하여 25%지분 한도규정을 피하고 있다. 민간항공법은 이런 방식의 외국인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우회방식을 활용한 민항기 제조면허 발급 사례가 있다. 그러나 면허발급기관인 Rosaviakosmos는 방침을 바꾸어 이런 우회방식의 면허발급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 다이아몬드광산

귀금속류에 관한 연방법(제41-FZ호, 1998.3.26.)은 다이아몬드광산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합계를 소수 지분(5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다이아몬드, 귀금속광산에 대한 계약 서명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은행

외국기업이 러시아은행 및 여신기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은행지분을 1% 이상 매입할 경우 중앙은행에 통지해야 하며, 20% 이상 지분취득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은행법(제86-FZ호, 2002.7.10.) 18조에 따라 중앙은행은 외국자본의 은행부문 진출조건을 정하고, 진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은 12%의 지분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러시아중앙은행은 한도 확대를 고려중이다.

○ 보험

보험업 조직에 관한 연방법(제204-FZ호, 1999.11.20.)은 외국보험회사의 자회사 또는 외국투자자가 49% 이상 지분을 가진 러시아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강제사회보험, 각급 정부조직의 재산에 대한 보험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보험업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제한이 완화되고 있는데, 2003년 12월 보험법 개정을 통해 EU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EU역외기업은 EU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진출이 가능하다. 현재 외국기업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외국자본의 참여 한도를 보험산업 전체자본의 25%로 제한하는 것이다.

○ 언론/방송

러시아연방 매스미디어법(제107-FZ호, 2001.8.4.)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외국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러시아법인, 이중국적자 등의 러시아내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및 프로그램 공급이 금지되며, 89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 또는 전 인구의 절반 이상에 TV전파를 발송하는 기업 설립도 금지된다. 또한, 동 법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미디어기업의 지분 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 토지

농지거래법(제101-FZ호, 2002.7.24.)에 따라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리스는 가능하다.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러시아 기업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일반 토지의 경우 외국인의 소유가 가능하다.

○ 건축관련 허가

기업은 공장건설, 확장 등에 있어 지역, 환경, 건축, 위생, 소방,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모스크바의 경우, 통상 3단계(1단계 디자인 개념, 2단계 상세계획, 3단계 최종 검토 등)의 사전허가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프로젝트의 성격, 지역, 관할단체와의 관계 등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설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건설예상기간을 여유있게 두고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동산 취득

러시아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토지에 비해 건물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편이다. 러시아민법은 건물사용 및 매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헌법(19993)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 9조는 토지의 사유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연방토지법(제136-FZ호, 2001.10.25.)은 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상업적 토지시장 형성의 토대가 되었으며, 토지를 대출담보나 현물출자 자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연방토지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소유권 및 토지매매의 허용 등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토지관련 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연방토지법은 기존 지방정부의 규정에 우선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제도 및 규정이 연방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소유의 토지가 입찰 또는 경매방식으로 개인이나 민간법인에 양도될 수 있다.

단, 해당토지에 건물이나 기타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개발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는다.

농지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러시아 민법이나 토지법은 비농업용 토지의 임차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토지 임차권은 49년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연방민영화법은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토지의 임차기간을 49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농업용 토지의 최장 임차기간은 49년이다. 또한, 일반적 제한으로서 농업용 토지는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대상이 될 수 있다.

아. 국산품 및 내국인 고용조건

생산물분배법은 러시아법인에 하청계약자로서 계약 수행을 위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러시아 관계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노동자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국세청 www.nts.go.kr

설비생산주문의 최소 70%는 러시아기업이나 러시아에 납세자로 등록된 외국기업이 담당해야 하며, 고용인력의 80%는 러시아인이어야 한다.

정부령 531호(1993)는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계약의 경우 30% 이상을 국내 하청계약자에게 할당하고, 우선적으로 국내자재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중앙은행규칙 제02-195호(1997.4.23.)는 외국인소유 은행등록의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력의 75%는 러시아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이 대표이사 직위를 차지하는 경우 이사회의 50%는 러시아인이 차지해야 한다. 또한, 본사 파견이사 중 최소 1명은 러시아어 업무 수행이 가능할 만큼 러시아어에 능통(공인된 입증서류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이 참여한 보험회사는 대표이사와 선임회계사는 러시아인이어야 한다.

자. 러시아에서 면허취득이 필요한 사업유형

사 업 유 형	면허발급기관
개인 탐정 및 보안 서비스	내무부
무기 및 군수품 거래	
무기 및 군수품 전시	
무기 및 군수품 수집	
무기 및 군수품 습득	내무부 산하 지방 기관
군수품 생산 및 관련기술 분야의 지적활동 결과물을 외국인에게 양도(전달)	법무부
무기 개발, 생산, 수리 및 재활용	일반무기청, 항공 및 우주청, 조선청, 제시스템청, 군수청
무기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탄약 카트리지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군수청
군수품 재활용 관련 개발, 제조	군수청
폭죽 제조	
Ⅳ, Ⅴ 등급의 폭죽 보급	
화학 무기의 보관, 이동, 재활용과 관련된 일	

사 업 유 형	면허발급기관
러시아 국민의 해외 취업 알선	내무부
의약품 및 의료기구 유통	보건부
의료서비스	
의약품 관련 서비스	
의약품 및 항정신제 물질의 개발, 제조, 가공, 보관 운반, 유통, 판매, 습득, 사용 및 재활용	
전염병 경원균의 사용이 필요한 활동	
제약	산업과학기술부
의료기기 제작	
의료기기의 기술적 보수, 유지	
살균제, 살충제 제조	관련 기관
수의(獸醫) 서비스	
감정(鑑定) 행위	자산부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 복원	문화부
담배 제조	국세부
에틸알코올, 알코올 함유 제품의 제조, 구매, 보관 및 공급, 에틸알코올이 재료로 쓰이는 기타 활동	
알코올 제품 소매 영업	관련 기관
환경 유해 쓰레기와 관련된 활동	천연 자원부
하층토, 숲, 식물, 동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사용	
각종 date carrier를 활용한 오디오녹음, 비디오녹화	출판, 미디어부, 문화부
극장에서의 필름 공개 상영	관련 기관
철도 운송 관련 수리, 유지	철도부
철도 승객 및 화물 운반	
모터 차량을 이용한 승객 및 화물의 국제 운송	교통부
승객 및 화물 해상 운송	
승객 및 화물 내륙 수상 운송	
3.5톤 이상의 모터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	
택시운송업	

사 업 유 형	면허발급기관
해양항구와 내륙항에서의 화물 적재 및 하역	교통부
해양항구에서의 선박 검사	
선박 예인	
8명 이상용 모터차량을 이용한 승객운송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및 화물 운송	
항공기 유지, 보수	
경제분야에서의 항공기 사용과 관련된 활동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리, 서비스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사용	긴급상황부, 광업 및 기술검사청
의약품 및 향정신제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재배	관련 기관
가축 사육	농업부
최고급 종자 재배	
곡물 및 곡물제품 저장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리, 서비스	
인공보철물과 정형외과적 서비스	노동부
비(非)정부 연금기금 활동	
위조보호장치가 필요한 출판물(주식 등) 인쇄	재무부
감사활동	
관광, 여행 관련 활동업	경제개발통상부
발전 또는 난방 네트워크	발전부
정유, 가스처리	
정유, 가스 그 제품 운송	
정유, 가스 및 그 제품 저장 또는 판매	
도박 등의 조직 및 활동	국가 스포츠 위원회
측량기기 제조 및 수리	국가 표준 위원회
건축디자인 Ⅰ,Ⅱ 등급의 건물 건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또는 건축	국가 건축 위원회

사 업 유 형	면허발급기관
어류 및 기타 수중생물 채취 및 운송	국가 어업 위원회
뮤추얼 펀드 운용	연방 주식시장 위원회
뮤추얼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관리	
뮤추얼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수탁자 운용	
주식시장에서의 직업적인 활동(브로커, 딜러 등)	
은행 영업	중앙은행
물품교환 거래	반독점부 산하 상품교환 위원회
선물 및 옵션 중개행위	
보험	재무부
대지 측량	연방 대지측량과 지도제작국
지도제작	
수문기상 및 지구물리학적 현상 수정을 위한 작업	연방 수문기상과 환경 모니터링국
수문기상학 및 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활동	
폭발물질 제조, 보관, 사용 및 유통	군수청, 광업 및 기술검사청
폭발 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이용	광업 및 기술검사청
화학적으로 위험한 제품 생산시설의 이용	
석유, 가스용 운송 파이프라인 이용	광업 및 기술검사청
산업안전 감정(鑑定)	
광산 조사	
우주탐사활동	우주청
우주기술의 개발, 제작 및 테스트	
우주용 제품의 수리	우주청, 교통부

❑ 참고문헌

○ 국가별 정보, KOTRA

○ 해외투자 정보, KOTRA

○ 2013년도 주요 10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KOTRA

○ 러시아 이전가격세제 개정법 발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러시아 진출기업이 현지 경영시 유의해야할 세법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Legal Alert April 2013, bakermckenzie

○ New Russian Transfer Pricing Law, Deloitte, 2011.10.

○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KPMG, 2013.04.

○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PWC, 2013.04.14.

○ Transfer pricing global reference guide, Ernst & Young 2013.02.

○ 2014 Global Transfer Pricing Country Guide, Deloitte, 2014

○ Russia Clarifies Procedures for Concluding APAs, Deloitte, 2012

○ Navigating the choppy waters of international tax(2013 Global Transfer Pricing Survey), Ernst & Young 2013

○ “The Russian Federal Tax Service on how to conclude advance pricing agreements for tax purposes.”, Goltsblat BLP, 2012.01

○ Global transfer pricing guide – Russia, Grant Thornton, 2012

○ TRANSFER PRICING IN RUSSIA Guidelines, Russia Concluding, 2014

○ Russia Transfer Pricing Overview, Praxity, 2012

○ Overview of new Russian transfer pricing rules and their impact on trading and financing structures with Cypriot companies, PWC, 2012. 03.

○ Advanced Pricing Agreement Guidelines published in Russia, Ernst & Young, 2012. 01.

○ Russian Transfer Pricing Law, McDermott Will & Emery, 2014

○ Advance pricing agreement conclusion process, KPMG, 2013. 09.

○ 기관 웹사이트

- 러시아 국세청 : http : //nalog.ru/
- 주러 한국대사관 : http : //rus-moscow.mofa.go.kr/
- 코트라 : http : //www.kotra.or.kr/
- 한국수출입은행 : http : //www.koreaexim.go.kr/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 : //world.moleg.go.kr/
-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 http : //www.ois.go.kr/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http : //www.eishub.or.kr/

국세청
www.nts.go.kr/kor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러시아 세법 등 2014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러시아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204-2838
팩스 : 044-216-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대구지방국세청

서 기 관 이 영 철
국세조사관 김 성 협
국세조사관 김 자 영
국세조사관 윤 종 우
국세조사관 문 효 상
국세조사관 성 한 기
국세조사관 손 은 숙
국세조사관 도 영 수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 담당관실(☎044-204-283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프린팅마당